

맑은 사회를
함께 열어갈
참여연대회원을
모집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 ▶ <맑은사회 만들기>본부 및 참여연대가 개최하는 각종캠페인과 시민강좌에 참여하고, 회원간의 다양한 친목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 ▶ 참여연대 소식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할인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의 참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회비 안내

어린이(국민학생 이하)	연 1천원 이상
학생(대학생 이상)	연 5천원 이상
일반	연 3만원 이상
가족	연 3만원 이상
단체	연 3만원(가입비)
후원회원	연 10만원 이상

회원가입문의 및 신청
(02)-797-8200

회비와 후원금은 아래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금주:이진희
- 제일은행:325-20-131100
- 상업은행:192-08-76153
- 농협:094-02-097506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 ▶ 부정부패신고전화 - <시민의 눈> 상담을 통해 시민제보 접수를 받습니다.
- ▶ 부패방지법 제정캠페인 등 <맑은사회만들기> 각종 시민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캠페인을 함께
할 연대단체를
찾습니다

- ▶ 지역시민단체, 직업별 직능별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독립적이고 건전한 단체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 ▶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의 전부 또는 일부 캠페인에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김창국 · 전화: 797-7413 · 팩스: 797-7412
천리안, 하이텔, 니우누리: PSPD ·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797-8200)

이문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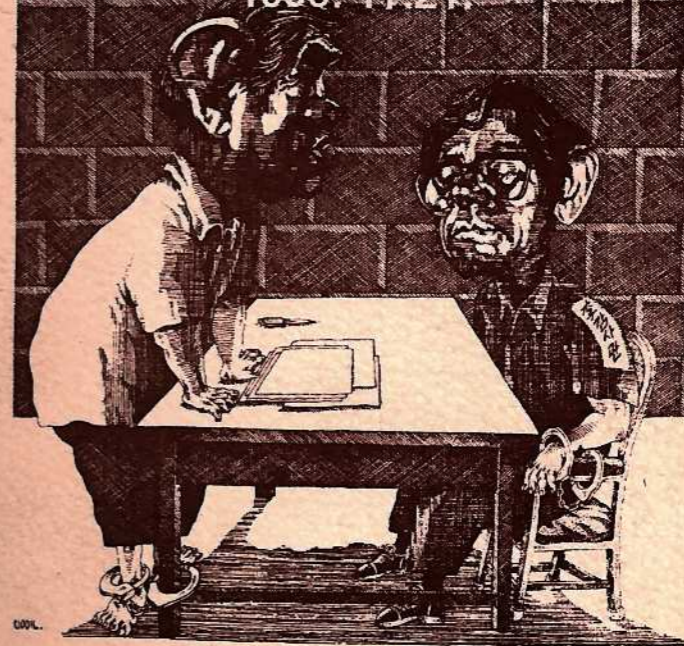
이문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중단」 양심선언

6

투쟁의 기록

1996. 11. 2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용기있는 양심의 승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자 사례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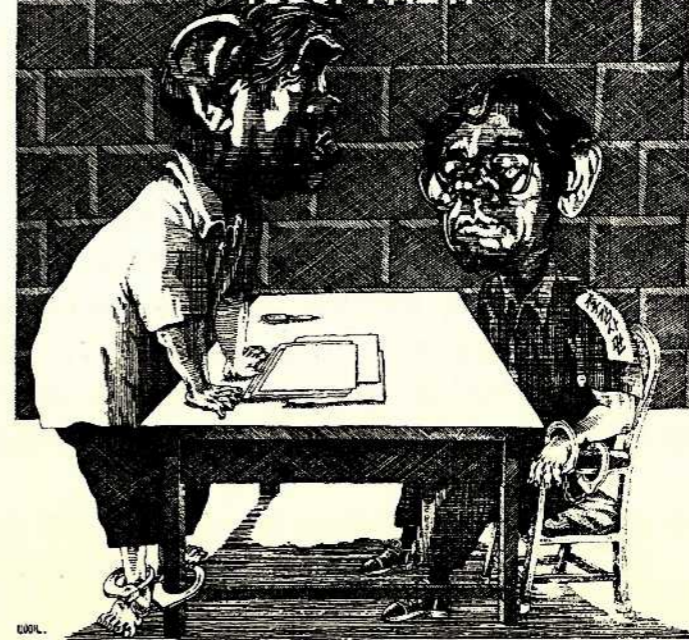
이문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중단」 양심선언

6

투쟁의 기록

1996. 11. 2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자지원단

발 간 사

권진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장)

이문옥 감사관은 이 시대의 권력구조의 비리를 폭로했다고하여 탄핵되어야 할 권력으로부터 거꾸로 탄압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분이다. 이 자료집은 그가 겪었던 의로운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사회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언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에서 이 자료집을 내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정의가 이문옥 감사관과 같은 정의롭고 용기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앞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결코 고난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서는 모든 용기있는 의인들과 손잡으려고 한다. 지금도 우리사회 각 영역과 부분에서 비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는 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에서는 이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도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내부비리고발자, 공익정보제공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이감사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여 마지 않는 것은 이문옥 감사관의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승리로 확정되어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복직되게 됨으로써 이감사관의 의로운 투쟁이 승리의 대단원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 민주시민들의 승리요, 용기있는 양심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 당국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 참여연대는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사정기관이 독립되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청렴결백성을 잃지 않고 정말 국민의 공명정대한 공복으로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또한 개인이 사정기관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했다고 그를 패썹죄로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효산콘도건축허가비리에 대한 감사중단의혹을 양심선언한 현준희 주사를 이제라도 복권, 복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료집을 통해 이문옥 감사관이 승리하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그 분이 보여준 지칠 줄 모르는 용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11월 25일

인사말

이 문 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한겨레 신문사와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는데, 저에 관한 자료집까지 만든다니 더욱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캠페인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를 진실로 추방하려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정부패방지기본법의 주요내용이 될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자보호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인사말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부정의 발본에 앞장설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현행법규는 공직자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7조 제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 55조와 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누구나 최초 임명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공직자로서 공지와 보림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1)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 (2)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 (3)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4)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부정은 계속 심화되고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들이 부정을 저질러 수천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500개 기업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1.1%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 사이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부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세력들은 부정에 관련된 돈을 마련하고 또한 한층 부풀리기 위하여 또다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전체에 부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그늘에서 많은 국민들은 부정에 관련된 자금 이상의 많은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이 추방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이 몸조심하느라고 국민과의 약속인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까지 관련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직자가 부정을 추방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희생만 당하고 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한국정치착회에 의뢰하여 4급내지 9급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에서 답변한 공무원의 81.2%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관행이 부정한 것인줄 알지만 그것을 문제삼아 동료 또는 상하공무원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할 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79.5%였고,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무원을 따돌리려는 풍토가 있다.”는 답변이 61.9%였습니다.

공직자들이 이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자기가 소속한 부서의 부정을 시정하려는 극소수의 공직자들이 정부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91년 정경유착의 일부를 국민에게 알리어 시정하려다가 구속됨과 동시에 파면당하였으며, 한준수 전 연기군기군수가 국회의원선거의 관련개입부정을 국민에게 알려 시정하려다가 구속됨과 동시에 파면되었고, 윤석양 전 이병이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시정하려다가 역시 구속기소되어 2년 징역형을 받는 등 공직부정을 고발한 공직자는 한결같이 희생만 당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정을 고발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은 그 행위자외에 옆에서 지켜보는 상하급자와 동료 또는 감독직에 있는 공직자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직사회의 부정을 발본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입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부정을 없애고자 노력하다가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보호규정을 포함한 부정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법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공직사회의 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부정을 근절시키는 무기가 되게 하고,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는 동료나 상하공직자가 그대로 묵과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부정을 예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6. 11. 25.

● 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애써주신 자원활동가
김미라, 안형준, 이공법, 주계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문옥 약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보통고시 합격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1년 수학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세무전공) 1년 수료
- 감사원 감사관
- 90. 5. 양심선언으로 징계파면.
 -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 및 고등법원 파면 취소 판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
-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관권개입 감시위원장
-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회장
- 「12.12 군사 반란자 기소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
- 「5.18학살자 처벌 및 특별법 제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
- 불교바로세우기 위한 재가불자연합 공동대표
- 전국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자문위원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100만인시민감시단장 겸 부정부패 고발센터」 소장
- 민주당 노원(을)지구당 위원장
- 96년 11월 감사원 복직

승소에 이르기까지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19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땅의 보유 실태를 폭로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원의 독립을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하였다. 그는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이 43 퍼센트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90년 5월 감사원 서기관으로 재직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자료 폭로」

90년 5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90년 5월 16일 검찰 구속

90년 6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보석결정

90년 12월 27일 감사원 중앙징계위 파면의결

91년 7월 31일 이문옥 서울고등법원에 파면처분청구 소송

93년 9월 6일 서울지방법원 무죄판결

93년 9월 14일 검찰, 서울지법공판부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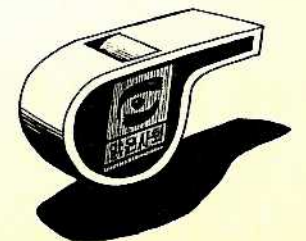
94년 4월 27일 서울고법 파면처분취소 판결

95년 2월 21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무죄 판결

96년 4월 10일 대법원 형사2부 무죄확정 판결

96년 5월 11일 대법원 파면처분청구 소송 승소판결

96년 11월 4일 감사원 복직



**제 1 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폭로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파문**

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8
2. 양심선언과 연행	17
3. 언론 및 각 단체 반응	31
4. 이문옥 감사관 구속적부심 관련내용	41
5. 폭로내용 조사 및 확인	53
6. 검찰 수사결과 발표	73
7. 이문옥 감사관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81
8. 감사원 반응	89
9. 보석 관련내용	97
9-1. 구속 후 1차 공판 관련내용	106
10. 이문옥 감사관 수상 관련내용	111
11. 소송 관련 내용	117
12.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복직	150

2부. 이문옥의 사회활동

1. 사회단체활동	154
2. 92년/95년 국회의원 선거출마	179
3.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노력	205
4. 사회활동 주요자료	223

제 3부. 인간 이문옥

1. 인간 이문옥(각종 인터뷰)	258
2. 자필 서신과 가족의 인터뷰	267
3. 격려편지 모음	277

제 4부. 양심선언 후 법정관련 자료

1. 구속과 석방/무죄판결	288
2. 파면과 파면취소	313
☞ 참여연대 부정부패추방캠페인 소개	354

제1부.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파문

1.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2. 양심선언과 연행(90.5.11) 중언내용/감사원 감사일보/양심선언관련 기사
3. 언론 및 각 단체 반응(90.5.11-6.3) 경실련 성명서/사설/관련기관·단체 입장 및 성명
4. 이문옥 감사관 구속적부심 관련내용 구속적부심 관련기사/이문옥 감사관 잔술 내용/구속적부심 기각 기사
5. 폭로 내용 조사 및 확인 검찰 조사/사실/폭로 내용 사실 확인 사회단체, 언론, 야당의 반응
6. 검찰 수사결과 발표 수사결과 발표 내용/수사결과 발표 안팎
7. 이문옥 감사관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90.5.17-20) 사회단체, 야당 석방추구대회 관련 기사
8. 감사원 반응 이문옥 감사관 폭로내용에 대한 감사원 해명/여론 동향
9. 보석 관련 내용 보석청구 관련기사/사설/석방
9-1 구속 후 1차 공판 관련 내용
10. 이문옥 감사관 수상 관련 내용
11. 소송 관련 내용
12.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복직

기업 비업무용 땅 강제매각

투기 통치차원서 근절 연내 정치·사회 안정 이룩

노대통령 특별담화

노태우 대통령은 7일 시국관련 특별담화를 발표, "대기업과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이나 과도한 부동산은 강제매각을 해서라도 처분하겠다"면서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풍조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해설 3면>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념 관계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처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시국담화문에서 "이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고 정착될 때까지 앞장서 두려하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유있는 계층은 과

도한 소비와 사치를 자제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책임을 져달라"면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스스로 처분하고 노사와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증과하고 땀흘려 일해 얻은 소득과 이윤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당통합과 관련, "체질이 다른 정치세력을 통합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면서 "민자당이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의 불신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한겨레 90. 5. 8

'땅투기 억제 특별법' 추진

비업무용·친인척 위장 처벌근거 마련

정부·민자 이달말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후 이 승은 부총리와 김용환 정책위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책위의 를 갖고 '부동산투기 억제법'을 위 한 특별법'을 제정, 계약서 허위 기재와 미등기전매, 임직원 명의 또는 타인 명의에 의한 기업의 토지취득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월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이 특별법은 스동기의무 화 도입과 관련된 법적 근거 스 대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의 처 분 및 신규토지의 취득허가에 관 한 규정 스투기단속행위 및 판정 전담기구 설치조항 등을 포함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대 기업 토지취득을 집중특별관리하 고 그 대상에 스30대 재벌 스도 급순위 일정순위 이상의 건설업 체 스시중은행·단자회사·보험회 사·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상호 신용 금고 등 금융기관 스기타 국 세청 및 금융기관에서 특별관리

요청한 기업 또는 개인 등을 포 함시키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기업의 기존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스 법인 또는 소속임직원 명의의 보 유토지, 가동기토지, 명의신탁토 지에 대해 일제신고기간을 설정, 신고토록 하기로 했다. 세무사 등을 투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투입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부분 이상의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특별관리대상기업과 임직원 의 토지취득은 정부가 그 취득여 부를 허가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일반기업은 투기 또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정받았 을 경우 그 이후 모든 토지취득 을 허가할 발도록 규제를 강화키 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적 투기억 제 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투기억제위원회 를 설치, 추경운영하기로 했다.

매각방식은 스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과다보유토 지를 매각유도하고 스비업무용 또는 투기성적의 토지는 자진처 분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성업공 사에서 공매토록 하고 공매가 안 될 때는 공공기관에서 취득할 때 의 가격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스부동산투기 행 위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시 과표를 1백% 현 실화(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를 적용)시키고 스임무용 토지양 도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축소 현행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매각해 다른 고정자산을 구입 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시켜 주던 것을 2년이상 가동공장으로 사용한 뒤 매각해 기계장치, 공 장 및 부속토지와 시인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로 면세대상을 한정 하기로 했다.

또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도 현행 주거기간 3년 보유기간 5년에서 주거기간 5년, 보유기간 7년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책위에서는 또 올해 5월1 일 이후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한 담보비율을 공장용, 사 원용 주택 및 부속토지는 현행대 로 유지하되 기타업무용 토지는 현행의 50%로 축소하고 비업무 용 부동산 및 타인명의의 토지는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겨레 90.5.8

49개 그룹 땅매입 不許

내년 6월까지... 生産用은 제외

非업무용 6개월內 매각
금융기관땅 석달안 처분
사치성 건축은 許可제한

투기억제·物價안정 대책 발표

靑瓦臺에 특별대책반 설치

제3者명의의不動産담보금리지

중앙.90.5.8

노대통령 시국담화 필 담았나

노대통령의 7일 담화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국의 담화에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민생치 △국민의 부정부패 △경제 불신 △가상증 △주가 △노사분규 △노조 분열 △노조 기인한 것으 △노조 개혁 △노조 대략적인 정 수습책을 밝

고 강조 말로만 끝나는 헛된 약속이 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시국 진반의 위기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시국과 국민'을 담화에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민생치 △국민의 부정부패 △경제 불신 △가상증 △주가 △노사분규 △노조 분열 △노조 기인한 것으 △노조 개혁 △노조 대략적인 정 수습책을 밝

대통령은 이날 '단호한 대내외 정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시국을 과시하면서 수습책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대외적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나열하고 "실효성을 증명할 때 까지 앞장서 노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

고 강조 말로만 끝나는 헛된 약속이 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시국 진반의 위기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시국과 국민'을 담화에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민생치 △국민의 부정부패 △경제 불신 △가상증 △주가 △노사분규 △노조 분열 △노조 기인한 것으 △노조 개혁 △노조 대략적인 정 수습책을 밝

근로자 등 각 부문에 대한 협조 호소는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실익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재의 위기가 사실과는 달리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과도한 요구분출이나 준법정신 결여 등을 지적한 대목은 정부의 책임과 정치의 난맥상을 파노광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 난국의 근본이유는 3당통합 이후 비대해진 여권이 지나치게 가진자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섰고 금융실명제 등 개혁조치를 포기한 데다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월세값 폭등, 집값 상승 등을 조래해 실질하게 일해온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이날 "기업의 비업무용 및 과도 부동산을 강제매각 해서라도 차질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중에는 과연 정부

대책이 8일 정부의 대기업과 다보우 부동산 매각시사의 대외 표현상으로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강硬的인 반발할 움직임을 보였다고 우려가 추후되고 있다. 채계기 이날 6개 경제단체 회장단회의 및 5.8 특별보완대책의 대안 마련을 통해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강제매각은 행정조치가 아닌 특별법이나 한시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행정조치만으로는 계속 추진할 경우 이익을 옹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경련, 무용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단협, 경총 등 경제단체장들은 8일 오전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최근 정부가 강력히 유도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조치를 법에 따라 시행돼야 행정조치로 강요할 경우 해당기업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경단협의 윤영선 부회장은 이같이 전하고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필요한 조치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호응하겠으나, 행정력이 아닌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시법 이든 특별법이든 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여신관리규정 등 행정력에만 의존할 경우 오해와 불만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3개월 이전에 임시국회라도 열어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뒤 집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기준에 대해 체계는 이견이 있다"고 말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기업들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키로 경제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모임에서 회장단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에 근로자 주택 등 복지시설을 건설하도록 해 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내용이 10일 전경련 회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기업가 결의대회의 안전으로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벌기업의 한 간부도 "지금 상태라면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만들어 팔아야 할 편면"이라며 "과연 정부가 정당하게 사들인 땅을 팔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번 대책은 기업,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이 부동산을 통한 이윤추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한 생산투자에 전념

한겨레 90. 5. 9

회의 보다 넓은 민주화 약속이나 정의구현을 위한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진해 언급없이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KBS나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정치투쟁으로 규정해 온 정부의 자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각종 분규를 사용자에 대한 관점에서 판단해 정당한 근로자의 권익추진조치 여부를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국환 기자> 점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

다. 현 시점에서 난국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채 도덕성을 의심받으면서 가진자만을 옹호한다는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노대통령의 담화가 아무리 강단 있는 담화라도 있을 수 없다. 이번 담화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부동산투기 등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정부로서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윤국환 기자>

대증요법 치중... '불신' 근절책 없어 "안정 정착때까지 독려" 이례적 의지 포명

이밖에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념 관계법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통해 투기억제에서 강력히 실천을 토록 하겠다"고 한 것도 이들이 이미 투기억제에 별 효과가 없음을 이 관망한 상태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보다는 오히려 금융실명제 등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정책들을 위한 개혁정책을 본래대로 추진하는 조치가 보다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날 담화는 또 정치·경제·사

회 보다 넓은 민주화 약속이나 정의구현을 위한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진해 언급없이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KBS나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정치투쟁으로 규정해 온 정부의 자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각종 분규를 사용자에 대한 관점에서 판단해 정당한 근로자의 권익추진조치 여부를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국환 기자> 점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

한겨레 90. 5. 8

재계 '강제 매각' 반발 조짐

"법근거 없이 행정조치만으론 곤란" 경제단체장 회동... 정부대응 주목

대책이 8일 정부의 대기업과 다보우 부동산 매각시사의 대외 표현상으로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강硬的인 반발할 움직임을 보였다고 우려가 추후되고 있다. 채계기 이날 6개 경제단체 회장단회의 및 5.8 특별보완대책의 대안 마련을 통해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강제매각은 행정조치가 아닌 특별법이나 한시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행정조치만으로는 계속 추진할 경우 이익을 옹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경련, 무용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단협, 경총 등 경제단체장들은 8일 오전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최근 정부가 강력히 유도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조치를 법에 따라 시행돼야 행정조치로 강요할 경우 해당기업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경단협의 윤영선 부회장은 이같이 전하고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필요한 조치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호응하겠으나, 행정력이 아닌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시법 이든 특별법이든 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여신관리규정 등 행정력에만 의존할 경우 오해와 불만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3개월 이전에 임시국회라도 열어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뒤 집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기준에 대해 체계는 이견이 있다"고 말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기업들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키로 경제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모임에서 회장단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에 근로자 주택 등 복지시설을 건설하도록 해 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내용이 10일 전경련 회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기업가 결의대회의 안전으로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벌기업의 한 간부도 "지금 상태라면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만들어 팔아야 할 편면"이라며 "과연 정부가 정당하게 사들인 땅을 팔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번 대책은 기업,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이 부동산을 통한 이윤추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한 생산투자에 전념

〈대기업 보유 부동산 대책〉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부동산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 보완 대책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 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천3백91억원으로 87~89년 연평균 27.4% 증가. 면적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 토지가 1억2천3백20만평, 건물이 9백60만평 등 모두 1억3천2백80만평으로 87~89년 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 취득은 주택건설용, 공장 및 부대시설용지, 사육 및 양돈 소 등이 주종.

△비업무용 부동산 = 지난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6월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체 처분계획을 은행간담회의 제출. 구체적인 내부부·은행 감독원과 함께 5월중 5대 계열기업군, 6월중 나머지 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진단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기업은 비업무용 판정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수 요청.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 기타 토지는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6개월 이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부동산 취득 및 신규여신 일체 금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계열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처분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정비 = 원수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제2금융권도 이를 준용. 동산과 지조과 이득세상상의 판정 기준을 통일.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면적(백만평)	87~89년 평균 증가율(%)		
	87년말	88년말	89년말
토지	113.4	120.8	123.2
건물	7.7	8.5	9.6
계	121.1	129.3	132.8
금액(조원)	7.8	10.1	13.1
			27.4

〈증권·보험사 보유부동산 추이〉 (억원)			
증권회사	88.12	90.3	증가액
보험회사	3,489	6,314	2,828
합계	12,987	17,256	4,279

〈보험·증권사 매각대상 부동산〉

회사명	위치	면적(평)	장부가치(백만원)	매각대상 선정 사유		
삼성생명 해운대	부산시 연수원동해운대1해운대구	3,309	3,735	25,200	89.12	같은 지역내 연수시설 보유
대한교보	경기도 용인군 용인혜덕면관갈 용인군	483,554	12,359	89.10	업무의 목적	
세일생명	대전시 유성구	1,182	3,408	89.8	개발제한지역	
대신증권	전주시 완산동	727	2,371	5,382	90.3	7층 건물중 3개층 임대
전주생명	울산시 중구	657	1,849	5,913	89.7	5층 건물중 2개층 임대
용산증권	부산시 중구	982	9,635	39.6	본사빌딩임대면적	
제2금융부처	불명					제2사육, 신축은과다

한겨레 90.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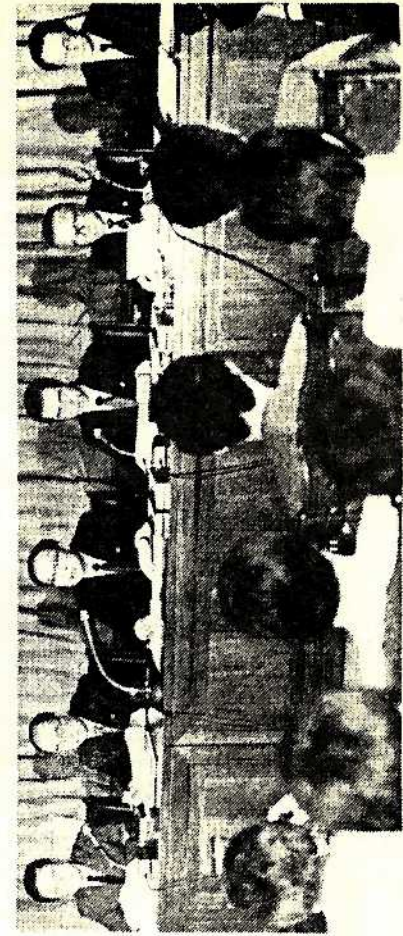
재벌 땅 매입 1년간 동결

**투기억제 대책 49개 그룹 대상...생산용 제외
비업무용 6개월내 강제매각**

여신관리대상 49개 계열기업군(계열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후면수입 채육시설 등 업무용이더라도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내년 6월 까지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토지 건물 등 비업무용 부동산은 스스로 팔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하든지 토지개발공사에 매수해도록 요청.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금액3명의 부동산 스변장 공보·박차급주책 고압오락장 등 사치성산 스개인 소유 토지 중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 유류토지를 확보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2.3.5면〉

정부는 8월 오전 과실 정부 중정사에서 이승문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 겸 경의 재부·박철상공·관과 건설·최영철 노부 장관과 서영만 국제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계열기업군이 임직원을 병행하는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 등 전문 휴양장과 오락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30대 계열기업군이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중 자진신고토록 하고 이들 부동산은 3개월 이내에 적법절차에 따라 기업으로 명의 이전토록 하며,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은 증여세를 추징할 것과 아울러 강제 처분토록 했다. 임직원이 기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독적으로 취득한 개발제한지역 주변지역 토지 등에 대해서도 자급 출처 및 탈레여부를 조사한다. 또 현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가동공장 등



이승문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제청장이 8월 오전 합동 활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에 팔리지 않은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거나 또는 토지 개발공사에 매입 요청토록 하였다.

한겨레 90. 5. 9

49개財閥 부동산購入 금지

대년 6월까지... 生産用地만 예외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정부제2종합청사에서 李承濤부총리를 비롯, 재무 상공 건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의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金振平기자>

非업무 6개월내 매각

이달중 三星 등 5개 그룹 실태 조사

政府, 부동산·物價대책 발표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정부제2종합청사에서 李承濤부총리를 비롯, 재무 상공 건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의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49개 財閥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6개월 내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 대우 등 5개 대형 그룹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정부제2종합청사에서 李承濤부총리를 비롯, 재무 상공 건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의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49개 財閥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6개월 내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삼성, 현대, 대우 등 5개 대형 그룹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0년
조선 5.9



2. 양심선언과 연행

- #증언내용
- #감사원 감사일보
- #양심선언관련 기사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로비 밀려 감사중단

지난해 8월 감사원, 조사반원 인사조처

원이 지난해 재벌그룹에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 감사원 중단을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의 이 감사에 대해 이주여진 것이 시위 관계자의 증언이 있을 것으로 있다.

신투기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의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1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재벌그룹 소속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제형의 과세절차 감사에 착수, 상당부분 과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감사가 진척되고 있었으나 감

입된 감사반은 중단할 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비업무용 부동산 관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을 진의했다. 그러나 상부 지시로 "법인

제가 없는 한적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백승우 감사관은 "이런 바 없다"면서 "상실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용인 자연농원 등 삼성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사반원 6명을 보내 조사하던 중 어떤 재벌의 이아무개 부회장이 감사원 고위층을 만나 조사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뒤 감사관 등이 상 황태까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로 감사반을 철수시켰다"면서 조사대상기업의 로비활동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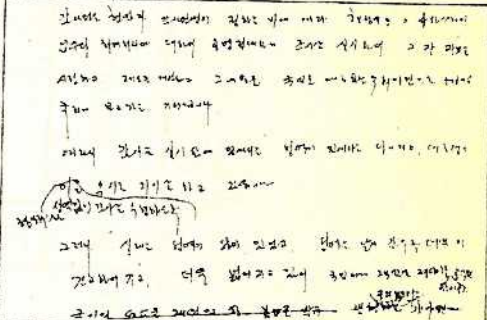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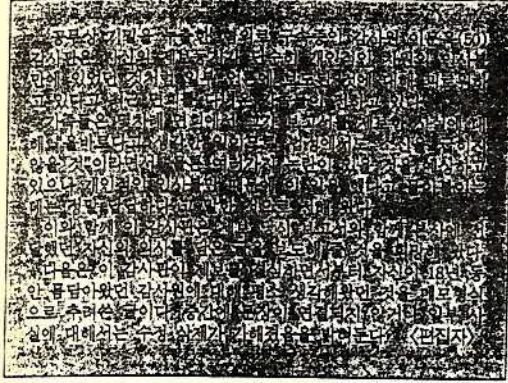
한편 감사원은 직할 뒤 단행된 인사에선 조사에 관여했던 담당 두장은 지방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담당장은 자포탈양원, 감사반장을 고옥칠로 전보발령하는 등 각각 감사원내에서 퇴직된 뒤 단행된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용인 자연농원 등 삼성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사반원 6명을 보내 조사하던 중 어떤 재벌의 이아무개 부회장이 감사원 고위층을 만나 조사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뒤 감사관 등이 상 황태까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로 감사반을 철수시켰다"면서 조사대상기업의 로비활동을 확인했다.

한겨레 90.5.11

"할일 못한 감사원...역사앞에 죄짓는 마음"

양심적 공직자 고뇌 생생한 이문옥씨 메모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쓴 자필 메모의 첫머리(오른쪽)와 지난 15일 이 감사관이 구속 수감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소문 대검청사를 떠날 때의 모습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 등 그 산하단체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착안점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 내용을 학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학회에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관 실시함에 있어 사.실의이 있어서는 안되고, 대동행도 형식적으로는 성의없이 감사관 수행하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나 자신이 실제 체첸하거나 감사원에서 동료들에게 들은 일부 얘기 가운데 6공화국에 몰이와서 발생한 사례들을 국민 앞에 밝히 이의 근본적인 사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관 실시하는 도중 재벌이나 힘있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 감사가 중지된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8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37개 대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을 검토할 당시입니다. 이 감사의 주관청은 비업무용 토지 소유 등과 관련해 법인세가

제대로 신고됐는가, 세무관서에 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실시해 공평과세가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개선을 전의해 당시 한참 진행중이던 토지공개념제도 확립에 기여코자 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실시 도중 모체법의 압력에 따른 사무총장의 지시로 중단됐습니다. 감사가

의식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포장을 경영하는 법인의 인건수입이 법인 전채수입의 2분의1이 못 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해당법인의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사 공포장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데도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세무서의 과세적정여부를 감사하려고 했으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 발견된 부당한 사례들은 빠른 시일 안에(보통 60~90일 이내)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의 처분요구로 시행해야 하는데 특정 제벌에 관련된 사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총재원은 88년 11월 감사에서 우방회사를 비우량회사에 합병하면서 사무가 합병 전에 비우량주식을 받은 가리므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거래 차익을 2천5백억원(추정치)이나 얻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1년이 넘도록 '신중검토'등 명분으로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관 하던 중 '관'과 관련된 것 같은 사실상 감사를 중단하고 자체조사특별고해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현재 감사원내 구상하고 있는 간부직인 가운데 많은 수가 청와대-안기부 등 권력주변에서 맹렬한 사람들로 구성된 데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사람에 줄을 대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거센 반 또는 사람들이 많아 그밖의 직원들의 사기는 멀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은 인사인부를 수행하는 도중에 상권이 싫어하지 않는 비위사태만 밝혀내야 법집사권이 라는 비유 듣는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문제점유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원은 복속유 권고라도 불의와 싸워 정의 실현하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은 외부세력에 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으며 영민의 의사와 없는 같은 내법관 출신인사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관 하던 중 '관'과 관련된 것 같은 사실상 감사를 중단하고 자체조사특별고해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한겨레 90.5.22

實地監査歸屬報告
(89-31624-3220)

監査班長 : 第2局第4課 監立官 : 李 文 玉
 監査對象機關(事項) : 國稅廳(法人의 非業務用 不動產 取得에 대한 課稅實施)
 監査對象法人 : 38個法人(對象法人中 28個法人 調査實施)
 監査期間 人員 : '89. 8. 10 - 8. 29(10名)

調査結果
 狀況

(1) 不動產 保有實態

(面積單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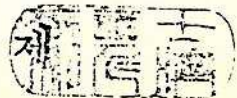
區分	保有面積	直接使用		使用計劃中		貸 賃	
		㎡	%	㎡	%	㎡	%
土地	103,262.837	100	52.2	47,610,972	46.1	1,760,759	1.7
建物	5,820,372	100	87.8	150,201	2.7	602,566	10.3

- ① 38個法人中 23個法人의 不動產 保有現況(15個案件 資料未提出)
- ② 使用計劃中 面積은 非業務用 不動產으로 指稱된 面積과 取得后 2年 未經過하여 非業務用 不動產으로 分類되지 아니한 不動產의 合計 面積임.

466

위 사본임
 변호사 박 인

참고자료



증제 4 호

處理意見 (事務總長 指示의)

8/30

○ 法人에 의한 不動產 投資는 關係機關의 公式的인 發表內容보다 實情 深刻히나
 ○ 政府에서 土地公賣會 人員을 委任한 立法 推進이라고
 ○ 財源에서 稅法改正에 對한 意圖가 있음으로
 ○ 稅法改正 關係 事項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비밀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 감사원 자료 충격

공개념 논의중 재벌 '국토과점' 바조 업체 중단로비...감사원 독립성 논란 '5.8 부동산 매각 증용'도 엄포용 될 가능성

공개념 논의중 재벌 '국토과점' 바조 업체 중단로비...감사원 독립성 논란 '5.8 부동산 매각 증용'도 엄포용 될 가능성
공개념 논의중 재벌 '국토과점' 바조 업체 중단로비...감사원 독립성 논란 '5.8 부동산 매각 증용'도 엄포용 될 가능성

공개념 논의중 재벌 '국토과점' 바조 업체 중단로비...감사원 독립성 논란 '5.8 부동산 매각 증용'도 엄포용 될 가능성
공개념 논의중 재벌 '국토과점' 바조 업체 중단로비...감사원 독립성 논란 '5.8 부동산 매각 증용'도 엄포용 될 가능성

한겨레 5.14

재벌 땅 감사내용 폭로 이문용 감사관 구속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언론보도 관련 비밀누설 혐의

한겨레 90.5.16

재벌 땅 감사내용 공개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 구속

본지에 사본제공 기밀누설 혐의

1980.05.16 검찰 "정부 공신력에 손상"

감사원 감사원이 자신이 조사한 재벌기업의 비밀내용을 부동산 감사내용을 언론기원에 알렸다는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수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관련기사 11면〉
감사원 감사원에 대한 구속은 공무원법 위반수질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다. 이문옥(50)씨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감사의 명령을 받고 한일계 부동산 관계에 관한 개세청내 감사만 반영으로 감사관 지시를 받던 중 그에게서 감사중단 사실을 받고 부동산 관련 사실을 사본 1부를 보관했다. 다 최순<한겨레신문>에 이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재벌기업의 비밀내용을 부동산 비율이 43.3%에 달해 은행감독원의 발표한 내용이 틀어 있었다.

악화시켜 이씨가 구속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휴가를 끝내고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감사원 검찰실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중앙수사부 수사관들에게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 조사한 재벌기업의 비밀내용 부동산 비율 43.3%는 14일간의



15일 밤 재벌 땅 감사내용을 본사에 공개, 비밀누설 혐의의로 구속된 이문옥

짧은 기간에 조사한 부실한 내용이고 23개 기업의 비밀내용 부동산 구별기준이 은행감독원이 5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기준과 달리 이씨의 조사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정부와 은행간 특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겨레신문>에 자신의 감사보고서를 제보할 당시 14일 만에 감사가 중단된 것은 재벌의 로비를 받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망망하게 진술하고 "감사활동이 외부 압력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중단 사실과 관련, "이씨는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하고 "감사원 관계자를 불러 이씨의 주장대로 감사가 외부작용으로 중단됐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동산

한겨레
90.5.16

90년 . 5월 . 16일

言論에 "비업무土地" 자료 유출

監査院 서기관 구속

【서울 15일 특파부 특보】 감사원 서기관이 15일 밤 재벌 땅 감사내용을 본사에 공개, 비밀누설 혐의의로 구속된 이문옥의 비밀누설 혐의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감사의 명령을 받고 한일계 부동산 관련에 관한 개세청내 감사만 반영으로 감사관 지시를 받던 중 그에게서 감사중단 사실을 받고 부동산 관련 사실을 사본 1부를 보관했다. 다 최순<한겨레신문>에 이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재벌기업의 비밀내용을 부동산 비율이 43.3%에 달해 은행감독원의 발표한 내용이 틀어 있었다.

【서울 15일 특파부 특보】 감사원 서기관이 15일 밤 재벌 땅 감사내용을 본사에 공개, 비밀누설 혐의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감사의 명령을 받고 한일계 부동산 관련에 관한 개세청내 감사만 반영으로 감사관 지시를 받던 중 그에게서 감사중단 사실을 받고 부동산 관련 사실을 사본 1부를 보관했다. 다 최순<한겨레신문>에 이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재벌기업의 비밀내용을 부동산 비율이 43.3%에 달해 은행감독원의 발표한 내용이 틀어 있었다.

19년 외길 감사관의 선택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李文玉씨

鄭基修 기자

전 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지난 2월말경, <한겨레신문> 편집국에는 한통의 심상치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제보자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5월11일,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1면 톱을 시켜며게 장식하며 바로 그 제보내용을 보도했다.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로비에 밀려 감사중단." 다음날 역시 1면 톱으로 이어진 보도는 독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 은행감독원 1.2%와 큰 차."

제보자는 첫 보도가 나간 지 3일후인 5월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행돼 철야조사를 받은 뒤 바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혐의는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누설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는 물론 퇴직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구속이유였다.

한국인론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 문제의 제보자는 감사원 교육실 교수담당관李文玉씨. 그는 지난해 8월 감사원 2국4과에서 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28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끝내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올해 나이 50세. 부인(46)과 고등학교 2학년인 딸(17), 중학교 3학년인 아들(15)이 있다.

李씨의 구속을 보면서 품게 되는 세간의 궁금증은 대강 이런 것들이다.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이 오십에, 너무나 자녀들



"이미 각오했던 일" : 16일 아침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승용차에 오르기 직전의 이문옥씨와 그가 남긴 자필 메모

의 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한창 어려운 시기에 그같은 위험을 무릅쓴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더라도 한 것인가?

"감사원 상층부가 중심을 못잡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의문들을 이씨 본인의 말로 확인할 길은 없다. 이씨는 구속됐으며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그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사에 제보할 즈음 그가 남긴 자필메모와 구속 직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그의 심경 등을 종합,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히고 있는 '범죄사실'과 비교해보면 그 해답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씨의 '범행동기'를 '인사불만'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영장에 나타난 '피의자 이문옥의 범죄사

실'을 발해제보자. "피의자 이문옥은 감사원 감사관(4급)으로 일하며... 제2국 제4과에 소속되었던 자로서, 89년 7월경 상사의 명에 따라 국제청을 대상으로 한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실태감사반의 반장으로서... 8월16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다가,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9월초경 그때까지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 사본 1부를 보관중 12월 29일 감사교육실 교수담당관실로 전보되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을 계기로... 5월5일 11시경 강남구 소재... 뉴욕다방에서 <한겨레신문>...에게... 사본1부를 건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로서 구속치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임."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사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 이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이씨는 그러나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할

機密누설監査院서기관구속

大檢 비업무용 不動産자료 言論에 유출

【서울 19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감사원 감사관(4급)으로 일하며 제2국 제4과에 소속되었던 자로서, 89년 7월경 상사의 명에 따라 국제청을 대상으로 한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실태감사반의 반장으로서 8월 16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다가,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9월 초경 그때까지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 사본 1부를 보관중 12월 29일 감사교육실 교수담당관실로 전보되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을 계기로 5월 5일 11시경 강남구 소재 뉴욕다방에서 한겨레신문에게 사본 1부를 건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로서 구속치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임.

한겨레신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한 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조사를 거쳐 죄상이 밝혀진 후, 이 부장관이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교형인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 90.5.16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부장관은 과잉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으로 감추고 있는 비리 등의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란 피를 말리는 작업과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원내에서는 실적 부담이 없는 내근부서를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장의 감사관들이 "커피나 과일 대접조차 물리치고 물만 마신다"는 것은 피감사기관에서 비교적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따라서 인사보다는 그의 성격이나 평소의 소신에서 이번 일이 비롯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이씨 주위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광주고 7회인 그의 동창생은 "문옥이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가난이고 또 하나는 전라도 말로 짹짹(간간)"이라는 것이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의 간간함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소문난 것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이문옥씨의 고향은 전남 나주 왕곡. 가난한 농사꾼의 집 장남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보통고시에 합격했다. 62년 충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71년 이후부터는 줄곧 19년 동안 ‘감사원 사람’으로 불리게 됐다



타고난 감사관 : 지난 78년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는 이문옥씨.

었다. 외모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용통성 없는 공무원’ ‘직업감사관’이란 말을 주위에 서 많이 들어왔다.

2년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는 20여년 동안 종로구 명륜동의 산복대기에서 살았다. 이씨의 27평 아파트 안에는 그만한 아파트를 갖추고 사는 중산층에서 볼 수 있는 집기들이 별로 없었다. 대신 딸의 나이만큼 묵은 구형 전화기가 눈길을 끌었다. 집에 가훈이 있느냐고 아들에게 물으니 그는 “분수에 맞게 살자”라고 했다.

부인의 화장대가 이씨의 책상도 겸하는 듯 화장대 위에 회계학 관련 교과서들이 열댓권

쌓여 있었으며 <장길산> <월간 다리> 같은 책들도 눈에 띄었다. 직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쓰고난 전산용지 뒷면을 회계학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부인의 말로는 이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몇번이나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그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는 공인회계사, 토지평가사 등의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 많다.

이문옥씨가 평소 책임기, 특히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보였다라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고졸출신임에도 승진시험 등을 통해 동기생에 비해 진급이 늦지 않았으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야간대학을 거쳐 최근에는 특수대학원까지 마친 점이 그런 것이다. 지난 78년에는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씨의 모든 노력은 감사원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데 부인은 그것을 “감사원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청내에서 감사원 동료들을 만나 이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음을 건네면 그들

그 지위와 임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감사원 기구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金永駿)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무처로 2원화되어 있다.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원장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감사위원들로 짜여진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의 결기구로서 감사원을 대표하지만 감사업무에 대한 실무는 사무처에서 맡고 있다. 사무처는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 밑에 이른바 감사활동부서인 제5개국 및 기술국과 기타 지원부서로 구성된다. 각국은 대개 5개과로 구성되는데 주요감사대상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1국 1과에서는 경제기획원, 2과는 재무부 및 산하 국영기업체와 국책은행, 3과는 동자부 및 산하 단체, 4과는 상공부 특허청 공진청 등, 5과는 체신부 및 통신공사 등을 맡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2·3·4국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서부터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각시도군)에 이르기까지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제5국은 주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이른바 기동감사업무를 전담하는데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이른바 특별사정반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들도 5국 소속이다. 말하자면 과거 감찰위원회의

감사원, 무엇하는 곳인가

행정기관 회계검사와 공무원 직무감찰이 주임무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일까? 감사원의 재벌기업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 실태 조사보고서를 신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현재 감사관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새삼 ‘감사원이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관심이란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뿐 아니라 ‘도대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본질적 물음을 담고 있다.

감사원 사람들은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을 두고 말할 때 곧잘 조선시대의 사헌부부터 입에 올리지만 오늘날에는 감찰이라는 국가기간조직이 그 주요임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기구는 정부수립과 함께 48년 7월17일 설치된 審計院과 監察委員會라는 두 기구이다. 당시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의 검토와 정부 각기관 및 그 기관들의 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검사를,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 및 정

계의결을 관장했다. 특히 초대 감찰위원장을 지낸 鄭堂 鄭寅普선생은 당시 대쪽 같은 성품으로 공무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 부수립 반년도 채 안되었을 때 위당이 曹奉岩 농림장관과 任永信 상공장관을 양쪽대립비유용 및 국가재산의 남용 등을 들어 감찰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내린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기껏 송사리만 잡는다”는 비난을 받는 요즘으로서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감사원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가진 감사기관이 설치된 것은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그만큼 권한이 커진 감사기구를 발족시켰다. 제3공화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감사원의 당시 주요임무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이었다. 그 뒤 몇차례에 걸친 헌법 및 감사원법 개정으로 감사원 기구 개편은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재벌로비에 분노” : 부동산 매각 결의를 발표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한 재벌총수들과 이들의 로비사실을 폭로한 5월11일자 <한겨레 신문>.

‘감사원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원장·사무총장·사무차장 등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들과 감사원 직원들의 인식이다... 이 나라의 정의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는 감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울지 못했던 사려를 밝혀 보고자 한다...” “...89년 8월경 국제청에 대한 감사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국제청에 의해 관계법(법인세 세법 등)의 규정대로 규제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법인의 토지투기 문제점을 제시, 토지공개념 도입에 참고함과 동시에 탈루된 세금을 세입조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0일이 되는 날 현재 상태에서 감사를 확대하지 말고 마무리지으라는 사무총장의 지시가...” 이씨는 여기에서 감사가 상급자의 지시로 중단됐으며 그것은 “재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장에 있는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라는 대목은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바로 로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잉감사’라는 말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반원이 감사 범위를 일탈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언행이 문제될 때 등”이라며 로비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새 보직에 대해 자주 만족 표시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감사 당시 재벌의 로비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간도 원래 예정이었던 14일을 다 채워 중단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감사에 대한 보고서가 완결 처리되지 않고 향후 감사를 위한 ‘자료화’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완결처리를 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급자의 판단에 속하는 일”이라고만 언급,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이씨와 함께 상급자들도 인사조치됐는데

당시 2국장은 국방대학원에 입교하게 됐으며 4과장은 자료담당관으로 발령났다가 올해초 퇴직, 현재는 모 단체의 전무로 있다. 감사원 측은 이들에 대한 인사가 과잉감사로 주의받은 사실이 일부 반영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安景相씨는 올해 초 감사원을 떠났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씨가 체포보게 된 결정적 동거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씨의 부인에 따르면 그는 교육실로 발령난 뒤 “힘이 없어 밀려났다”라고 말하는 등 ‘좌천’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였고 큰 고민에 빠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민은 인사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한다. 그것은 “남을 가르치는 재미가 참 팬찮은 것이더군, 우리 아들도 교수를 시켜야겠어”라며 전보된 교수담당관실의 일에 대해 자주 만족을 나타낸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씨의 한 감사원 동료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감사업무가 뭐 생기는 일도 아니며 일 자체 또한 쉽지 않다. 갖가지 교묘한 방

은 대개 "말이 없고 강직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해두자.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말꼬리를 감춘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남이 안보는 곳에서 이씨 집으로 격려전화를 해준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격려전화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일을 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낸 용기가 존경스럽다" 등이라고 이씨의 부인은 전했다.

이문옥씨는 자신의 글에서 밝혔듯이 "감사원이 이래선 안되겠다"는 마음, 감사원의 파행적 운영을 자기 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보겠다는 충정에서 이번 제보를 감행한 것으로 동창생들은 믿고 있다. "그것을 더욱 촉발시켰던 것은 아마도 재벌의 로비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된 일이었던 것 같다"고 그를 최근에 만난 한 친구는 밝히고 있다.

보도된 다음날 스스로 제보사실 밝혀

이씨는 최근 이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추악한 재벌의 힘에 의해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 어야 할 기관조차 아무런 저항 없이 주저앉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이 에



공무하는 공무원: 책상으로 쓰고 있는 부인의 경대앞에는 전문서적이 쌓여 있다.

기를 전하면서 이문옥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의 참 공무원이라고 할까, 그런 존경심으로 그를 쳐다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 그 나이에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소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듯, 제보 초기에서부터 기사화된 뒤까지 몇몇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놓고 있다. 이씨의 제보를 받은 뒤 <한겨레신문>측은 2~3개월 동안 자료 확보 등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번씩 신문상의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그때마다 이씨는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운명'의 기사가 보도된 5월11일부터 이씨는 휴가원을 내고 마음을 정리했다. 일요일인 13일, 가족들에게 '통보'할 시간이 되자 마침 입원한 친척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부인에게는 전화로 "시골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나라와 감사원을 위해 한 일이다... 충격받지 말고 엄마 잘 위로하도록 해라. 절대 기죽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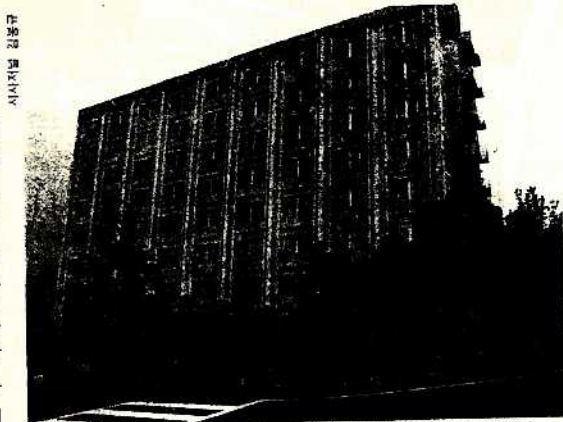
다음날 출근한 이문옥씨는 감사원 보고서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며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보의 이유"라고 동료와 상급자에게 스스로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 청내 검찰실로 이씨는 소환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검 중수부로 연행돼 '기밀'을 누설한 죄과에 대해 합세위 조사를 받았다.

16일 아침 그는 두 손을 쇠고랑에 넣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승용차에 오르기 전, 사진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초췌했으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

기능을 5국에서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고 회계검사는 다시 필요적 검사와 선택적 검사로 나뉘지만 주업무는 필요적 검사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의 감사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단체)은 모두 4만9천개쯤 되었는데 이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은 3만 3천3백개쯤이었고 감사대상인원은 모두 1백만명이 넘는 수효였다. 한편 감사원 직원은 현재 7백50명쯤이나 직무적과 별정직, 기능·고용직을 뺀 실제 감사활동을 벌이는 일반직은 5백60명 쯤이다.

이들 일반직 공무원들은 각국·과에 속하면서 감사정보수집, 실지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실지감사 끝·현장감사기간은 14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중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 기간중의 감사중단은 있을 수 없고 이감사관의 보고서를 상급자가 차기 '감사자료'로 삼으라고 한 것을 두고 '감사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감사원 전경: 이곳에서 4만9천여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의 회계검사가 실시된다.

편 이문옥감사관은 "10일만에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실지감사를 마친 감사관들은 감사과정과 그 결과를 '歸廳報告書'로 작성, 감사반장이 과장·국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사무차장·총장에게까지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과장·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불완전하거나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은 '감사자료'로 하여 차기 감사에 활용토록 하고 △입건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감사기관장, 피감사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해 입건, 불입건, 감사자료화 등 방침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처리안'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은 다시 감사반 보고서→과장·국장 검토→심의실의 법적·이론적 타당성 검토→사무차장·총장·원장 결재→주심감사위원 검토→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대상기관에 '처분요구서' 통보 등을 거친다. (감사원에서는 "이문옥 감사관이 작성·보고한 '귀청보고'는 현장확인만 한 결과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곧 감사원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공식자료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문옥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요구를 받은 각기관의 기관장은 이의가 없는 한 요구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처분요구에는 변상판정, 징계·문책, 시정 및 주의, 개선 등이 포함되는데 사안에 따라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통보 또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

김 당 기자

3. 언론 및 각 단체 반응

#경실련 성명서

#사설

#관련기관·단체의 입장 및 성명

“공익차원 정보공개는 의무”

‘이문옥 감사관 전격구속’ 법조·학계 반응 국민 알권리·언론자유 침해 우려

5.16수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감사관 간부를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서영훈 사장의 퇴진을 물고온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전에 언론에 누설된 사실과 비교해 정권측에 유리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이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 허영(헌법학) 교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통치권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을 기초로 매우 포괄적인 해석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행 판례에 따르면 재벌기업들이 생산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는 등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켜려되는 상황에서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린 행위는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제보자가 밝힌 대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알렸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실천한 것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변호사는 “일마전 KBS에 대한 감사결과가 일부 언론에 사전보도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검찰의 이번 구속은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또한 이번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 변호사는 “문제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져야 할 것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비밀을 엄수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제보자를 구속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자유와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방정배 교수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공적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탁받은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의무”라고 지적. “이런 의무수행을 법집행위로 규정해 구속하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90.5.16

감사원을 ‘감사’한 이문옥 서기관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감사원의 이문옥(52) 서기관이 사실상 백지화된 있던 대기업을 비업무용부동산 조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파행적인 운영을 막자는 충정에서였다.

이 때문에 이 서기관은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스스로 출근, 제보자는 자신이며

을 밝혀냈으며, 조세당국의 이에 대한 감시 역시 여러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한창 진행돼 가던 조사는 중도에 갑자기 중단됐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목살 됐으며 이어 12월말 인사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상급에 있는 과장, 국장까지 ‘좌천’되고 말았다. 상사로부터 감사중단의 배후에 재벌기업의 로비가 개입돼 있다는

이같은 소신을 가진 이 서기관이 14일 다시 감사원으로 정상출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이 서기관은 출근 직전 통화에서 “생각은 변함없으며 동료들이 충정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보도에 감사한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이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전 7시에 집을 나온 이 서기관은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칠 무렵인 오후 6시께 검찰실로 소환됐으며 이어 대검 중앙수사부로 연행돼. 발생 조사를 받았다고 부인에게 알려왔다. 밝듯게 감사원 문앞에서

파행적 운영 막기위한 총정 재벌로비등 배후에 실망...신문보도에 감사

자신의 본뜻은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위의 동료와 상급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기관이 23개 대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키로 마음을 먹은 것은 올해 초 그는 지난해 8월중순부터 한 달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것

발을 들은 그는 감사원기능의 독립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됐다.

이달초 <한겨레신문>에 조사내용을 알렸던 그는 지난 11일 기사가 보도될 때를 택해 휴가원을 제출하고 마음을 정리했다. 휴가를 떠나기 직전 중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아빠를 이해해달라. 우리나라와 감사원을 위해 한 일이다. 용서하라”고 다독기겠다고 부인(46)이 전했다.

나을 때를 기다리던 부인과 아들·딸이 인행장면을 지켜봤다.

이 서기관은 고교를 졸업한 뒤 62년 충무사에서 공무원으로의 첫 발을 들여놓았으며 7년부터 감사원에 재직해왔다.

감사원 재직중 ‘간간한’ 직원으로 알려졌던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파행적인 운영을 해온 감사원을 스스로 ‘감사’한 셈이다.

(이홍동 기자)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유출사건과 관련 이문옥 감사관이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심적인 공무원을 구속시킨 금번 사건은 '87년 박종철근 고문지사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으로서 이는 정경유착의 실상을 드러내고 검찰을 위시한 정부 당국의 제반 사정업무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존립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이다.

정부는 이문옥 감사관을 즉각 석방시키고 재벌의 토지부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재벌들이 업무용으로 위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소유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있는 그대로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이번 은폐기도는 전국민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경실련>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의 변호를 위한 변호인단을 즉각 구성함과 아울러 이문옥 감사관 구속과 정부의 재벌에 관한 정보은폐 기도를 규탄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990. 5.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41-7961-5; FAX 745-8006)

이문옥 감사관은 '알 권리'에 기여 정부의 재벌 '제재'는 시늬뿐인가?

정부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만을 '알라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들 <한겨레신문>에 주었다는 이유로 김찬에 구속된 것을 보고 특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럼 구속한 것이야말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총체적 난국'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재벌들의 땅무기를 지목해 그들의 땅 일부를 판도를 총용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30여년 가까이 봉직해온 감사원의 중진 공무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런 국민도 정부의 두 조치가 합리적 연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치인 차이는 긴장한 정책을 이씨의 구속을 통해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진전이 국민감정을 일시적으로 부마하리라는 겉치레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지금은 재벌들이 반했다고 내놓은 땅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쓸모없는 것이 많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씨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감사결과'의 충격적 내용이다. 이 감사결과 재벌 11곳에 소속된 23개 기업의 소유토지 가운데 43.3%가 '비업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은행감독원이 공식 발표한 30대 재벌 5백20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1.2%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중단됐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씨를 구속한 것은 재벌들이 땅무기를 일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자세한 수치를 함께 밝히진 데다 적절한 이유가 감사관 중단시킨 정부의 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실만 보아도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하면서 내건 이유는 너무 공백하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부실한 데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달라 은행감독원 발표내용과 평면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사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했다는 것이다. 물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법인세법, 지방세법 및 토지초과이익세법 등에 따로 정해져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심하지는 않으며, 차이가 있다 해도 1.2%와 43%의 크게 동떨어진 수치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기업체에 직접 나가 일일이 확인한 것이어서 은행감독원이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만 근거로 타당에서 판정한 내용보다는 훨씬 정확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별다른 이유없이 감사관 중단시켜놓는 이례와서 '부실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씨의 구속이 제기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은 정부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안신구속부터 하고 보는 구속반응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또 정부가 재벌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을 일부러 기피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씨의 감사결과 폭로가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이씨가 재벌기업의 비리들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군사기밀 등 국익과 직결되는 국가기밀을 드러내거나 공무집행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알렸을 때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문옥 감사관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개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부여당이 빛이낸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는 데 기여한 도용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정부는 티어상 국민의 상식이나 민감성에 맞지 않는 일을 예서는 안된다. 김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이문옥씨의 구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90.5.17

평민 "이문옥씨 오히려 포상해야"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자료들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된 자 김태식 평민당 대변인은 16일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의치면서 재벌의 무기실태를 언론에 알린 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며 "이씨는 구속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0.5.17

監査官의 구속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감사자료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된 것을 보고 특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럼 구속한 것이야말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총체적 난국'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재벌들의 땅무기를 지목해 그들의 땅 일부를 판도를 총용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30여년 가까이 봉직해온 감사원의 중진 공무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런 국민도 정부의 두 조치가 합리적 연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치인 차이는 긴장한 정책을 이씨의 구속을 통해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진전이 국민감정을 일시적으로 부마하리라는 겉치레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지금은 재벌들이 반했다고 내놓은 땅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쓸모없는 것이 많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씨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감사결과'의 충격적 내용이다. 이 감사결과 재벌 11곳에 소속된 23개 기업의 소유토지 가운데 43.3%가 '비업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은행감독원이 공식 발표한 30대 재벌 5백20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1.2%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중단됐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씨를 구속한 것은 재벌들이 땅무기를 일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자세한 수치를 함께 밝히진 데다 적절한 이유가 감사관 중단시킨 정부의 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실만 보아도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하면서 내건 이유는 너무 공백하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이수이후의 이문옥 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감사자료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된 것을 보고 특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럼 구속한 것이야말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총체적 난국'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재벌들의 땅무기를 지목해 그들의 땅 일부를 판도를 총용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30여년 가까이 봉직해온 감사원의 중진 공무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런 국민도 정부의 두 조치가 합리적 연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치인 차이는 긴장한 정책을 이씨의 구속을 통해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진전이 국민감정을 일시적으로 부마하리라는 겉치레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지금은 재벌들이 반했다고 내놓은 땅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쓸모없는 것이 많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씨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감사결과'의 충격적 내용이다. 이 감사결과 재벌 11곳에 소속된 23개 기업의 소유토지 가운데 43.3%가 '비업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은행감독원이 공식 발표한 30대 재벌 5백20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1.2%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중단됐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씨를 구속한 것은 재벌들이 땅무기를 일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자세한 수치를 함께 밝히진 데다 적절한 이유가 감사관 중단시킨 정부의 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실만 보아도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하면서 내건 이유는 너무 공백하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조선 90.5.17

국기원내 내부부서 양민들의 사생활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비밀이 43%에 달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문옥 감사관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문옥 감사관을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구속하면서 정부는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김철의 구속영장을 보면 "23개 기업에 대한 감사는 빈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은행감독원이 행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는 은행감독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면서 그 판정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장은 또 <한겨레신문> 기자 2명에게 감사 보고서 사본 1부를 진내주어 그 내용의 전체가 마치 진실인양 보도케 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보도내용이 마치 오보인 것처럼 적고 있다.

우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세청이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여신관리 규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같다"고 못박고 있다. 최근에 관계규정들이 개정되기 전에도 여신관리규정과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에 대한 1차조사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를 2~3건 찾아냈으면서 '특의 양양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47건 가운데는 업무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감사가 더 진행됐더라면 2~3건이 아니라 더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감사관은 물론 그의 말을 인용한 <한겨레신문> 기사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30대 제법 5백20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가 은행과 은행감독원은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유 명세서에 주로 근거해서 업무용·비업무용을 분류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어차피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제법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감독원 발표대로 1.2%에 불과한 것이라면, 최근에 10대 제법이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18%를 내놓도록 하고, 나머지 39개 제법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

또 기업의 부동산 구입 변경승인과 관련, 은행장을 면직시키는 등 사정당국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어떤 '심증'에 따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평소에 비업무용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규제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보장했다더라면 이런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있음에도 이같은 '초법적인' 조치를 써야 할 만큼 기업의 당투기가 심하게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법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전문회사를 '○○개발'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특별전담팀을 회장직속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투기를 규제하는 정부관리들의 '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그들의 대처방안을 수립해 보고한다.

또 규정이 엄격해도 관리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용을 가장한 비업무용 토지매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직원에게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준 것처럼 거짓 채무변제 약정을 체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안전판을 만들어 두기도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해태·두산 등 13개 기업이 23개 지점에서 양도인용 구실로 사들인 땅 9백43만

평 가운데 6.8%만이 양도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50대 제법의 7백71개 업체는 88년말 현재 전체 보유토지의 41.7%를 원료채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실상부한 원료 채취장도 있었지만, 나무 및 그루 심어놓은 임야는 목재와 펄프원료 채취장으로, 모래와 자갈이 쫓 있는 곳은 골재 채취장으로, 야산은 토석 채취장으로 얼마든지 그런 듯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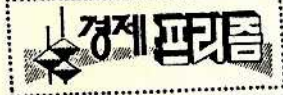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는 이 감사관이 폭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제법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선 관리들의 사명감, 이들을 감시감독하고 외부의 입김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해주는 사정기관의 독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구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난 14일 "특명사정만은 부동산투기 조사공무원의 활동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외부의 영향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안된다"며 감사중단 사건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바로 그 정부에 의해 구속됐다.

<이봉수 기자>



감사관 구속한 '두얼굴' 정부

한겨레 90. 5.18

모든 바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해 부동산투기 등 직무형 범죄와 관계회 등 직무상 비밀을 사전에 누설하는 국가정책 역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밀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의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그러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그런데 이 방침의 첫 희생자가 23개 제법제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예초에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가 아니라 43.3%에 이른다는 '감사보고서'를 인준에 넘긴 감사원의 감사관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 이 방침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김철에 구속되어 조사 받고 있다는 감사관에게는

김철은 이 사건에서 첫째, 제법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그 동안 발표된 것과는 달리 무려 43%에 이른다는 사실, 둘째, 제법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는 사실, 셋째, 제법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넷째, 감사원의 감사가 제법기업의 로비에 의하여 중단된 다음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이 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중 어느 것도 형법 제12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조 용 환

누구를 위한 '직무상 비밀'인가

이문옥 감사관 구속은 부당하다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형법 제127조가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칙·훈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방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83. 6.22. 80도2822 판결).

이 판례가 형법의 구성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할 여유는 없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이라도 그 감사관이 과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고 보기 어렵다.

우선 감사원이 기업의 부동산 투기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비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은행감독원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을 1.2%로 발표한 것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직무태만이며 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역시 비밀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가 적언치 않은 이유로 중단되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감사원이 제 직무에 충실치 못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비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 중단이 당사자의 주장대로 제법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감사하비 시정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1.2%가 아니라 43%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비밀이 될 수 있는가? 심부름도 인정했듯이 시민들은

사실로까지 이를 정도로 계층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특히 제법의 부동산투기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민은 제법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하여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은 마땅히 그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더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고발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5조), 감사원의 감사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중지시키고 결과를 감추으로써 오히려 제법의 부동산 투기를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는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이익'과 '필요'가 과연 누구를 위

한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의 방침이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제법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실상을 다시 은폐하여 국민이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는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제법의 부동산 투기실태를 공개한 감사관을 구속하는 조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려는 않고 그 잘못된 정책과 부조리를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면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는 것으로 '불만 사인이 화제성으로 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원천하는 데에는 "공무원이 헌정부가 아닌 진실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고수하고 내부적으로 하위의 원에게 보낸 것은 죄가 안된다"는 1985년 영국 런던 형사법원의 판결이나, 형법 제127조의 같은 조문이 아예 없는 일부에게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겨레 90. 5.18

관련기관 단체의 입장 및 설명

검찰 입장 : 피의자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는 14일간이라는 단기간의 조사에 의한 부실한 것으로 부정확하다. 더구나 피의자가 행한 23개 기업에 대한 감사는 8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이나 은행감독원이 행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조사는 은행감독원 자체기준에 따라 5백20개 기업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 자료의 평면비교는 부적절하다.

은행감독원 : 우선 양쪽 기관이 선택한 조사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상 혐의가 짙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사를 했을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점들 때문에 양기관의 자료는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하다.

평민당 金台植대변인 논평 : 감사원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문옥감사관의 구속은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태도의 허구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다. 검찰은 소신있게 공무를 수행해온 이문옥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으려는 반민주적 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민주당(가칭) 張石和대변인 논평 : 우리 당은 정부가 이문옥감사관을 구속한 것과 관련, 이를 소신껏 복무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일대 협박으로 규정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특명사정판'까지 만들어 공직자·재벌의 비리를 쇄신하겠다고 공표해온 정부가 이감사관을 구속한 것은 민주정권의 이중성을 입증하는 실례인 것이다.

전민련 朴祐燮대변인 논평 : 이서기관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부조직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사실 은폐에 항거, 감사보고서를 전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언론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자 의무이다. 盧정권은 지금이라도 재벌의 부동산투기 실태를 공개하고 이서기관을 즉각 석방하라.

경실련 설명 : 급변 사건은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비견되는 것으로 이는 정경유착의 실상을 드러내고 정부 당국의 사정업무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행정권의 존엄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이다. 정부는 이감사관을 즉각 석방시키고 재벌의 토지투기 근절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실련은 이감사관의 변호를 위한 변호인단을 즉각 구성함과 아울러 이감사관의 구속과 정부의 재벌에 관한 정보 은폐기도를 규탄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가자협회 설명 : 이문옥감사관 구속이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편파적 법집행임을 지적하면서 이감사관의 즉각 석방 및 사직당국의 공정한 법률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협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실태가 결코 국가기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또 지난 2월의 KBS 수당지급에 관한 감사원 감사 내용의 사전유출과 비교해 이번 이감사관 구속은 사직당국의 국가기밀 기준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나 재벌의 이익보호를 앞세운 편파적인 것임을 드러낸 계기가 됐음을 지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설명 : 이감사관 구속은 현정권이 특별사정판까지 구성,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뿐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또 이감사관의 구속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재벌의 부조리를 비호하고 언론인의 취재권 접근 또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한다.

달아 약간의 유용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친인척·임직원 명의로 위장분산 소유하는 관행에 비추면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율이 1.2%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씨도 검찰에서의 1차조사 때 "그렇다 하더라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20%는 될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벌 부회장이 조사중단 로비"
재벌의 부동산투기 확인과 아울러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감사가 대기업 관계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중단됐다는 부분이다. 이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관이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은행감독원의 공식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기업과 부동산 소재지에 조사반을 투입,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 상부로부터 갑자기 감사중단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이문옥 석방하라" 19일 오후 경실련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석방촉구 시민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역시 상부지시에 의해 '법인의 부동산투기는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토지공개념 도입 및 세법개정이 추진중이므로 차기 감사자료로 한다'는 의견이 붙여진 채 감사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감사관의 조사가 중단된 시기는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삼성 소유 부동산을 현장조사하던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는 "어떤 재벌의 부회장이 감사원 고위층을 만나 조사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뒤 감사를 더이상 확대

'비밀누설' 범위 불분명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

감사관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한 문제의 제보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크게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감사원이 재벌그룹 산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 외부 입김으로 갑자기 감사를 중단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공식발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李文玉씨가 제보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한겨레신문>에 제시한 자료 사본의 공식명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 實地감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감사원 제2국 4과 감사반이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조사물 토대로 작성했다. 여기에는 고위 간부의 지시로 감사를 갑자기 중단하기 전까지 재벌그룹 소속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제청의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수록돼 있다. 23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3천1백23만평 가운데 43.3%인 1천3백53만평이 비업무용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바로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오차 감안해도 20%는 될 것"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들은 허가기준을 초과한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형식상 용도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방치 혹은 임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동아건설과 회성산업은 이중 충남 남포면 양항리, 경기도 이천군 해월리 땅을 지난 10월 발표된 '10대 재벌 부동산 매각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43.3%라는 수치 자체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통제로 보기는 힘들다. 검찰에서는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기간이 14일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분류기준도 조사대상인 23개 기업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의 자체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씨 또한 제보 당시 "43.3%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마지막 확인과정에서 업무용으로 판정될 땅도 있었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목



89년 8월 감사원 감사 당시 비업무용으로 지적된 대기업 부동산 보유현황

회사명	부동산 소재지	면적	비고
(주)금호	경주 광안구 소촌동	12만9천622평	옥장용지 중 시육투수에 따른 시설기준 면적 초과보유
기아산업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만4천7천411평	농지를 비업무용으로 징기보유
(주)대우	경기도 용인군 처인면 대우 남구 복역동 이파르 동	6만1천848평 58세대	연수원 주변 일야 세무서장 권역내 세무서 직원 합숙소용으로 무상임대
동부제강	서울 용산구 동자동	2천248평	재개발사업 허가받고도 정기간 내대지로 보유
동아건설	충남 보령군 남포면 인현 서구 가평동	7만4천3천288평 3만1천5천889평	방조제 공사 때 토취장으로 취득해 비업무용으로 보유 토취장으로 사용했던 일야
삼성생명	서울 강남구 일원동	22만2천484평	사육·복지시설 용지로 취득, 내대지로 방치, 대리경락
삼성전자	경기도 용인군 기흥동 경기도 수원시 매곡동	3만3천6천800평 2만1천3천355평	공장용지를 내대지로 방치 공장용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유
반올림회	강원도 홍천시 신태동	2천365만5천222평	광산용지 중 용구령 허가기준면적 초과보유
유공 (신정개발)	서울 성동구 마장동 강남 용산시 용연동	1천1천482평 3만1천5천565평	학교부지로 쓰고 남은 땅을 체육시설 용목 징기보유 용업원 사택 부지내 일야
중앙개발 (삼성개발)	경기도 수원시 용연동 경기도 파주시 대안동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만7천평 2만7천666평 36만2천484평	과수농지를 주사업과 관계없이 취득, 보유 업무와 무관한 일야 주업무와 관계없이 골프장 용목으로 보유
중앙산업	서울 마포구 염곡동	2천(대지 8천10평)	빈집으로 보유하거나 개발사업 중앙건설에 무상임대
중앙일보사	경기도 고양군 지도동 용남 대안군 군용면 부산 태운대구 중동 제주도 연동	3만16천3천866평 44만9천911평 9천999평 3천435평	농지 지목지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취득·운영 연구소 부지 허용기준 초과보유 업무용으로 취득한 뒤 정기간 내대지로 방치
정우물산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3만7천7천1천7천7천	주업무와 무관한 일야
한성관광개발	경기도 수원시 하동	1만6천3천661평 2천(13천700평)	수영장 용 업무와 무관한 대지
한일개발 (한진개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 김해시 내동 서울 용산구 갈매동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제주도 서귀포시 로평동	4만3천평 2천400평 4천484평 2천277평 1천844평 4만1천111평	주업무와 무관한 일야 호프장을 부동산으로 취득 호남부지로 취득, 징기보유하다가 전야 이파르부지로 취득, 정기간 내대지로 보유 주유소 시설 허용기준면적 초과보유 기속시 대지 기준면적 초과보유 업무용 건축물 부속대지 기준면적 초과보유
재동물산(-)	제주도 남제주군 조천읍	3만865만2천6천655평	옥장용지 중 시육투수 기준면적 초과보유
현대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9만4천4천700평	주택건립용지로 취득, 정기간 내대지로 보유
현대자동차	경남 울산시 임원동 등 경기도 파주시 남양면	1만7천9천999평 1만4천7천3천333평	공장건축을 허용한도면적 초과보유 공장수업 때부터 자동차 주행성능 실험장으로 취득, 미완 공 실태로 보유
호남정유 (하기금성개발)	전남 여천시 소포동 전남 여천시 월내동 경북 포항시 흥포동 서울 중구 초동	3만6천8천888평 2만6천8천888평 1만6천6천888평 1천4천1511평 2천 622평	용업용지 중 시육투수 기준면적 초과보유 정유소 부지 미사용, 허용기준 초과보유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
최성산업(-)	경기도 이천군 해월리	32만1천8천888평	업무와 무관한 일야

*5월1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감사반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런 이씨의 주장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와 재벌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상습 부동산투기꾼 명단 발표' 등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던 때에 '일'이 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이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쪽에서는 이씨가 평면비교가 부적절한 두 기관의 조사결과를 언론기관에 누설함으로써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끼치고 해당 기업의 평가에도 피해를 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이나 재야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알린 것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만큼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정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보고서가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

서 재벌의 비리까지 비밀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얼마전 KBS에 대한 감사결과가 사전에 보도되고도 별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점을 상기시키며 법집행상의 행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씨의 구속은 제보 내용으로 인한 파문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비밀보호' 중 어느쪽이 우선하느냐 하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
金善葉 기자

국민은 법원의 판단 주시

李감사관 제보내용 '비밀보호' 필요하지 의문

'알 권리'는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야 하며, 의견형성은 정보의 입수를 전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알 권리는 '알릴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89년 9월의 결정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내포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알 권리가 정부의 비밀사항과 충돌하는 경우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말하면, 알 권리 또는 정부비밀의 그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항상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반면, 정부비밀의 유지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比較衡量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실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그 판단의 권한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돌아간다.



이민 제보는 비밀사항 아니다.

최근에 감사관 구속사건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규정이다. 이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지정된 것을 말한다. 학설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더 확대하여 부풀리고 있다.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부나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사항은 비밀로 분류·지정된 것이 아니다. 위의 판례는 수긍하기 힘든 것이지만, 설사 이를 따른다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보아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주시할 것이다.

◆
梁建 (한양대학교수·법학)

공무원의 정보제공 '당연'

"비밀누설" 구속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위협'

민 주적 지배체제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선행한다는 데 있다. 기본권이 유린되면 인간은 그의 인간됨을 파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적인 권리가 행사됨으로써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감정과 관심을 말하거나, 타인의 말과 글을 듣고 읽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실현한다.

말하는 행위와 말 듣는 행위는 그러므로 인간성숙의 기본조건이요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가 거대화·다원화·복잡화한 현



이 사건은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

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국민 개인들의 언론권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의 언론 미디어들에 의존해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 즉 국민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고 알고 혹은 말을 한다. 따라서 언론이 자유롭고 열려 있을 때 국민의 언론권 행사가 가능하며, 언론 또한 국민의 언론권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 헌법 21조의 '언론자유' 정신도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언론을 통해서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을 함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지체없이 보도할 의무가 있고, 정보원에게 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넘겨줄(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특히 정보원이 국가기관 일 경우는 언론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언론기자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이란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이문옥 감사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처벌받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공무상 알게 된 투기정보를 유출, 때론을 벌게 하였다면 그런 정보는 언론정보가 아니라 공무상의 비밀정보가 된다. 그 때문에 '이감사관 구속 처사'는 국민이 알아야 마땅한 언론정보와 투기의 비밀이 되는 '사적정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느껴진다.

'이감사관 구속처사'는 정보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사회에서 정보원에 대한 위협이요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공적 정보가 그렇게 위협받고 통제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근본적으로 제약당하게 마련이다.

◆
方廷培 (성균관대학교수·신문방송학)

4.이문옥 감사관 구속적부심 관련 내용

- #구속적부심 관련 기사
- #이문옥 감사관 진술 내용
- #구속 적부심 기각 기사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3千億수의 삼성생명税金 80億번
 고위층사돈 鮮京 감사대상서 제외
 현대회사합병 2千億臺 차의 경쟁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추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90. 동야 5.24

「監査院비리」정치爭點化

추감사관 폭로내용 野진상조사 國調權요구

眞偽 떠나 監査 正當性 훼손 大槇비상 與團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감사관의 진술이 재벌기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야 90.5.24

一波萬波「李文玉감사관拘束」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發言과분과 拘束적부심기가안판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大企業비호 監査중단되는 趨勢나영 공무상祕密누설罪여부 논란沸騰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동아 90.5.24

李감사관 適否審기가

在野법조계 可否추진자 잘못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서울市 87·88年예산 88억 대통령선거 비용등 지출

李文玉씨 주장...適否審의 기각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전국에 퍼져있는 4부제...
 (2) 중...
 (3) 중...
 (4) 중...
 (5) 중...
 (6) 중...
 (7) 중...
 (8) 중...

중앙 90.5.24

동아 90.5.24

서울시예산 88억 선거자금 전용

이문옥감사관 법정진술 87년 대통령·88년 총선 당시

1990. 05. 2

감사 중단...보고서 작성때 내용 빠져

서울시, 법에따른 집행 주장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가 시 예산에서 88억원을 정보비 명목으로 불법 지출,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 부처의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출됐다는 진술은 23일 감사원 이문옥(50) 감사관(사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황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린 심문을 통해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압력 등에 의해 중단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난 88년 1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 도중 대통령선거 당시 69억원, 국회의원선거 당시 19억원 등 모두 88억원이 정보비 명목으로 별도 지출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상부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억원, 서울시경찰국장에게 1억원, 서울시 각 구청장에게 5천만~1억원씩 모두 17억원이 변



태 지출됐으며 나머지 71억원은 지출내역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간부가 감사반장에게 "이 정보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감사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만했다고 밝혔다. 당시 각 구청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서명한 증빙서류가 있었으나 수방사령관, 시경국장 등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씨는 그 뒤 고건 서울시장에게 새로 부임했다는 표현적인 이유로 감사가 갑자기 중단됐으며, 그때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담당부

서에 넘겨졌으나 선거자금 불법지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87년 대통령선거나 88년 총선과 관련,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을 정보비나 관공비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수방사령관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시 예산이 아닌 방위성급을 전담한 것이며 시경국장이나 구청장에 대한 예산지원은 당초 예산에 정식 계상된 것을 정상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어 집행내역 불법이라는 예산도 당초 예산상의 지침에 따라 동·반장 등에 대한 추석 및 연말 보상금 지급이거나 구청장에 연말 결구어웃돕기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문옥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 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도중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인 최중원씨가 회장으로 있는 선거그룹에 대해 12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추징한 만한 사안을 발견했으나 "윗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청와대나 재벌기업 등을 통한 압력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선거그룹 최시호 전무는 "각 계열사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법인세를 탈루시킨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태우 대통령과의 사돈관계에 따른 압력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은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감사를 중단한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은 감사 당시(88년 11월 21일~12월 10일)에는 전혀 보고된 바 없었으며 이 감사관이 감사를 마치면서 관공비 정보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된 89억4천만원에 대한 감사를 미심사항이라고 보고했으나 감사가치가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한 일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과세실태 감사도 로비 때문에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감사비리 규명 이견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비리 폭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쪽의 의견이 맞서 걸림됐다.

"이문옥 감사관 석방

청와대 회담때 요구"

김대중 평민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5일 이문옥 감사관 문제와 관련, 오는

29일 청와대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감사관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내달 2일 시민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추구 시민대회 및 양심의 행진'을 오는 6월 2일 서울 파고다공원과 대구 YMCA 강당에서 동시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감사관주장 사실과 달라 감사원 해명

감사원은 25일 구속중인 이문옥(50)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원 비리사실 7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7, 88년 선거경비로 88억원을 집행했다는 주장

한겨레 90.5.26

한겨레 90.5.24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원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원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원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원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중앙 90. 5. 31

市 88억轉用선저用안인가 外壓의한監査중단인었다

윤영진 民自黨

【서울 25일 연합뉴스】 서울시는 88년 예산안에서 88억 원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던 계획이 감사원의 감시와 외부 압력으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보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는 시정보고회에서 시정보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는 시정보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는 시정보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위원장 出席...李文玉씨진술 「法司委 간담회」

【서울 25일 연합뉴스】 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법원 11층 법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정진술을 다룬기 위해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로 전환, 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이날 김위원장의 3개월기임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제벌의 로비로 중단했다는 이 감사관의 9개월의 폭로 내용 전부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87년과 88년 시예산 88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 감사관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내 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감사관이 서울시를 감사한 후 '감사 미

【서울 25일 연합뉴스】 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법원 11층 법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정진술을 다룬기 위해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로 전환, 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이날 김위원장의 3개월기임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제벌의 로비로 중단했다는 이 감사관의 9개월의 폭로 내용 전부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87년과 88년 시예산 88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 감사관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내 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감사관이 서울시를 감사한 후 '감사 미

【서울 25일 연합뉴스】 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법원 11층 법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정진술을 다룬기 위해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로 전환, 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다. 이날 김위원장의 3개월기임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제벌의 로비로 중단했다는 이 감사관의 9개월의 폭로 내용 전부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87년과 88년 시예산 88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 감사관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내 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감사관이 서울시를 감사한 후 '감사 미

이감사관 보고서 빈조 가능성 “검찰제시 자료 원본과 달라” 이문옥씨, 변호인단에 밝혀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사와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사와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사와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재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빈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영기·조승형 의사와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신경그룹 관련 중간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동계별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한겨레 90. 5. 31

5. 폭로 내용 조사 및 확인

#검찰 조사/사실

#폭로 내용 사실 확인

#사회단체, 언론, 야당의 반응

이 감사관 증언 정치문제화 야권, 진상조사 국조권 발동요구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예산 88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했고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 등 외부압력에 의해 사주 중단했다는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법정진술을 둘러싸고 평민·민주(가정)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해 이 문제가 커다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평민당은 2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3일 법정에서 폭로한 내용을 집중 논의, 이를 정치 문제화하기로 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감사원·서울시·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관련기사 3·11면>

김대식 대변인은 "감사원의 조사활동에 대한 외부의 압력은 거의 청와대로부터 가해졌다"는 이 감사관의 진술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서울시 예산 전용 사실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평민당은 이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감사관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그 방법으로 대중집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자금 88억원 전용과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장석화 대변인은 상명을 통해 "이는 노태우 정권의 정통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로서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문옥 감사관이 제기한 서울시의 선거자금 전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민연주의 이재오 대변인은 "서울시 예산 88억원이 선거자금으로 불법 유용했고 감사원의 감사행정이 청와대나 재벌들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었다는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을 듣고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면서 감사봉토의 개선과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감사관이 주장한 서울시 예산의 유용어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준병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만 사간을 개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감사원 운영의 개선도 아울러 촉구했다. 김태봉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감사관의 주장이 사실이 라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감사관의 폭로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관련자에 대해 분쇄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 진상공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과 관련, 24일 상명을 내고 "헌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봉괴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당장 감사중단의 진상조사, 공개하고 대통령은 국민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90.5.25

조선 90.5.25

이씨 자료로 본 서울시에산 선거전용

이문옥 감사관이 23일 구속적부심 불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총선 때 88억원 이상의 행정예산을 전용해 선거관련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까지 널리 의심을 받아왔으나 '물증'이 없었던 '행정의 선거개입'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직전인 87년 11월23일 서울시는 87년 예산에서 △과목변동없이 17억5천만원운 들

집행된 보상금·관공비·정보비가 47억3천5백여만원이고 잔액이 14억2천1백만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용으로 '주요사업비'라고 불린 선거대책비의 총 규모는 1백1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선거관련 비용은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의 문제"라면서 "보는 눈에 따라 2백~3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전용해 선거비용으로 쓴 1백억원이 넘는 돈은 주로 통장등에 대한 보상

을 지출했다. 이에 앞서 11월28일에는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비'란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14억원을 지출, 인구가 많은 구는 1억원, 적은 구는 5천만원씩 12억원을 나눠줬다. 또 같은 달에 교육비·행정비 등에서 23억4천만원을 전용해 구청에 배정,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방한화와 장갑을 구입해 주는 등 시민사혜금으로 지출키로 한 바 있었다. 이밖에 이해 10월 5·6일에는 '추석맞이 격려'라는 명분으로 평통위원 2천6백여명, 새마을지도자 2444천여명, 사회정화위원 2만5천여명, 예비군중대장 5백여명,

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 직전인 11월14일에는 민방위비·방위사업정보비에서 수방사에 1억원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돈은 서울시가 87년중 시교위에서 건네받아 수방사에 시설비 등으로 지원한 12억1천만여원의 방위성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선거홍보비용으로 주어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87년 당시 서울시청의 정보비는 각 분야별로 예산에 계상돼 있으며 그 규모가 3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6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이번에 입

선거의 관권 개입 구체적 실상 드러나 통장·주민들에 선심...관변단체 사례품

려쓰고 △내무행정비용 17억9천만원을 새마을지도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전용하고 △예비비에서 14억원을 '월동기 저소득층 생활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출한다는 등 총 49억4천만원을 선거관련 비용으로 쓴 것으로 돼있다. 감사 이전에 이미 예산에서

금, 저소득층에 뿌린 선물, 새마을지도자·사회정화위원·평통위원 등 관변단체 소속원들에 대한 사례품 등에 쓰여졌다. 서울시는 87년 12월2일 시내 1만3천8백여명의 통장등에 대해 6만원씩의 돈을 연말보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 총 8억3천여만원

정소원 8천8백여명 등 총 6만1천여명에게 5천~1만원의 앞치마·티스폰세트·비누세트 등 선물을 전달했다. 이런 선심공세와 함께 청와대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에서는 '87년도 특별기급확보계획'을 작성, 서울시에 55억원을 배정, 각 구별로 2억원씩 민정당 지구당위원장과 협의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는 70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사업비예산에 대통령 개인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으로 청와대 서류에 따르면 "대통령 각하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라"고 지

중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감사관은 특히 서울시의 관공비와 정보비를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으며 당시 감사관 받던 서울시 관계자는 관공비와 정보비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자료제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결국 감사거부서 인서를 이 감사관에게 써주었으며 2주일 정도 계속된 감사도중 에 김중래 시장이 총무처장관으로 옮기고 고건 시장이 부임해 감사가 3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호 기자>

한겨레 90.5.25

「감사원非理」정치爭點化 野、國調權발동 진상조사 요구

野(平)는 24일(25일) 서울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을 둘러싸고 야권은 정치 문제화하기로 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서울시 예산 전용 사실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평민당은 이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감사관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그 방법으로 대중집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자금 88억원 전용과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장석화 대변인은 상명을 통해 "이는 노태우 정권의 정통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로서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문옥 감사관이 제기한 서울시의 선거자금 전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민연주의 이재오 대변인은 "서울시 예산 88억원이 선거자금으로 불법 유용했고 감사원의 감사행정이 청와대나 재벌들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었다는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을 듣고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면서 감사봉토의 개선과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감사관이 주장한 서울시 예산의 유용어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준병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만 사간을 개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감사원 운영의 개선도 아울러 촉구했다. 김태봉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감사관의 주장이 사실이 라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감사관의 폭로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관련자에 대해 분쇄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과 관련, 24일 상명을 내고 "헌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봉괴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당장 감사중단의 진상조사, 공개하고 대통령은 국민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비리' 흑분은 민자당

1950. 5. 25

이문옥씨 법정진술 파문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폭탄성 법정진술로 인해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이문옥은 원정권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번 진술내용을 토대로 치열한 정치공세를 준비하는가 하면 이를 방어해야 할 민자당은 재발방지책이 있을지 불구 남방의 해석과 대법관들의 태도 등 한동안 조용했던 자중지란이 재현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평민·민주당(가칭)은 진술조사 차원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한편 정권의 부도덕성을 일러기 위한 대중집회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반

해 민자당측은 이 감사관의 '공무상 비방'을 혐의만을 강조하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민자당은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 가운데 대통령에 인척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깊은 충격을 던지려고 있다는 점에 특히 관측스러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태의 조속한 진정을 위해서라도 사실 여부를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정진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정계와 무관한 지지에 있는 민주·동화계 등 당내 계파별로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이에서부터 대법정안에 이르러까지 치열한 시각차를 보이는 등 관측을 깊게 못하고 있다. 민정계측은 박희태 대법원 등 유사종신들을 앞세워 이 감사관을 매도하고 여론에 선경선적으로 화폭이 쏟아지는 추태를 보인 반면 민주·동화계측은 이번 사건의 반사이익으로 민정계의 입지축을 좁힌다는 점에 대해 심적으론 반감을 품고 있다. 그러나 조사와 '책임자 문제'를 요구하는 등 과거의 야당 기질을 다소 발휘하는 모습이었다.

민정계의 박희태 사무총장은 청와대 주도로 특별사정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 관련 비리수사가 터져나온 데 주목하며 "시정수리를 떠나 이 문제가 커질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고 경각 우려를 앞세웠다. 박 총장은 또 "지금까지 각종 감사결과로 불이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론의 측면에서도 그동안의 감사활동과 현재 진행중인 사정활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느냐"며 조속한 사태수습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희태 대법원은 개인 의견만을 전제해 뒤 "본 안되는 선거가 어디 있느냐" "사후시에 선거관련 예산이 모자라도 예산 산출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관례화된 것 아니냐"고 사후시에서 시조차 부당하려 애쓰는 "예산 전용" 자체를 합리화하려 했다. 박 대법원은 또 "원래 서기관이 워 그리 많이 아니다" "구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추구행위로 진술할 만큼 마구 써

대도 되는 것이다"라 이 감사관과 언론을 좌충우돌식으로 공박했다. 이와 관련, "이러한 민자당의 일그러진 태도를 심의 의견하는 국회의원이 입장에서 법관적 효력을 갖는 예산결산 내용을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사후보고조차 않는 행위를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박 대법원은 "예산의 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용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가가 문제인데 예산전용만 문제삼는 것은 어찌가 있다"고 둘러댔다.

이 감사관의 충격적인 복로가 보도되면서 주각 진상파악에 나서는 등 민자당 반론을 보인 민자당대 민주계는 "진술을 밝혀 의혹을 씻어야 한다"는 직극적 자세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계의 한 의원은 "사후시에 대한 국정조사 때 그런 통문이 있어 사후시에 피한 것이 있었는데 정부가 부당하면 그때 폭동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터진 것 같다고 언급. 이 감사관의 폭로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는 모습이었다.

김영삼 대표회고위원은 23일 저녁 비서진들로부터 이 감사관의 법정진술 내용이 정치권에 끼친 파장 등에 관해 보고받았으나 구체적인 인상은 없었다고 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계의 지도부는 이 감사관의 폭로가 당내에서 개혁노선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시각에서 사태수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당내 분열상을 또다시 노출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 심각한 인동은 가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후시에 대한 감사관 발언은 국회 행정위원의 박희태 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야당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상임의 차원에서 다음 수발에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치정평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계의 이같은 직극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조금으로 동화계 의원들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병을 유보하겠다"면서 이 감사관의 충격적인 폭로를 대응할 계획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오전 열린 평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이 대외공세의 고매를 단탄의 필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고 노태우 정권의 부도덕성을 최대한 날카롭게 일러주기 진정하는 등 어떤 활기를 띠었다.

이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기 의원은 "비리를 밝혀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비리를 감추려하고 그 뒤에 이 나라의 최고권부인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동분을 감할 수 없다"고 발언을 연 뒤 "임시국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해 원내결정의 의지를 밝혔다. 유인하 행정부위원장은 "이 감사관을 들는 사면복권이 다음주중 집행될 것이라며 '사면복'부터 이 감사관을 격려하는 진화가 수도 없이 걸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희 대법원은 "이 감사관이 온갖 회유와 압력에 불구하고 국민 이익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며 "정부가 진정 부도덕성에 철저히 있다면 그를 기수이 놓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것"이라는 등 평민당이 앞으로 이 감사관의 법정진술을 정부의 정책상의 실천의지와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보고 늘어날 것임을 승기 지 않았다. <문화권·정경수 기자>

민정계 도덕성 먹칠 곤혹...언론에 화살

반사 이익 겨냥 "의혹 씻어야" 평민, "정권 부도덕 알릴게기" 대여공세 채비

이씨 자료로 본 서울시에산 선거전용

이문옥 감사관이 23일 구속적 부실 심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동명 선거와 88년 총선 때 88억원 이 상의 행정예산 전용에 선거관련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까지 널리 의심을 받아왔으나 '목종이' 있었던 '행정'의 선거관련'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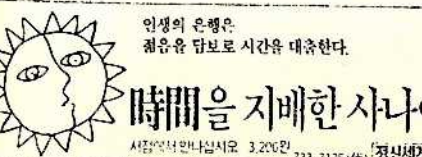
문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동명선거 직전인 87년 11월23일 서울시는 87년 예산에서 △과부변동금이 17955천만원을 들

선거의 관권 개입 구체적 실상 드러나

통장·주민들에 선심...관변단체 사례품

이문옥 감사관이 23일 구속적 부실 심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동명 선거와 88년 총선 때 88억원 이 상의 행정예산 전용에 선거관련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까지 널리 의심을 받아왔으나 '목종이' 있었던 '행정'의 선거관련'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동명선거 직전인 87년 11월23일 서울시는 87년 예산에서 △과부변동금이 17955천만원을 들



인생의 은혜는 재물을 담보로 시간을 대출한다. 시간을 지배한 사나이. 서울경제신문사 3,200원 733-3135(4선) 정신경제사

與野 대충돌이 다르다

사후시에 대한 이문옥 감사관의 폭탄성 법정진술로 인해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이문옥은 원정권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번 진술내용을 토대로 치열한 정치공세를 준비하는가 하면 이를 방어해야 할 민자당은 재발방지책이 있을지 불구 남방의 해석과 대법관들의 태도 등 한동안 조용했던 자중지란이 재현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李文玉씨 진술」 정치爭點化

事案미묘 眞實구명 착수 與

國政부패 주장 공세 강화 野

이문옥 감사관이 23일 구속적 부실 심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동명 선거와 88년 총선 때 88억원 이 상의 행정예산 전용에 선거관련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까지 널리 의심을 받아왔으나 '목종이' 있었던 '행정'의 선거관련'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문옥 감사관이 23일 구속적 부실 심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동명 선거와 88년 총선 때 88억원 이 상의 행정예산 전용에 선거관련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까지 널리 의심을 받아왔으나 '목종이' 있었던 '행정'의 선거관련'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 90. 5. 25

이문옥감사관 진술내용 조사

대검 정부 공신력 악화...사실여부 확인
법조 공정수사 의문 국회서 진위 가려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병부 이상)는 24일 이문옥(50) 감사의 구속자부심 심리과정에서 법조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진술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1차로 이 감사관 소환 조사를 했다.

이날 이같은 조치는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이 감사원 등 정부권의 공신력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가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이 권력의 침투와 관련된 비리인 만큼 이에 관한 것이 수사권력을 믿을 수 없다. 검찰이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씨의 진술내용은 구속피의자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돼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나 이 문제가 공개적 쟁점이 된 이상 검찰로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는 이씨의 진술내용만을 대상으로 본격수사를 벌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대검의 조사는 일단 사실확인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이 감사관을 대검 조사실로 불러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지출 등 진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서울시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지난 88년 11월에 실시한 당시의 감사기록 등 관련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내용을 '미심보고(심사하지 못한 내용)'란에 적어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이 보고서를 받은 당시 5국4과 임하일 수석감사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철의 이같은 조사방침에 대해 김창국 변호사는 "검찰이 감사관을 구속한 상황에서 그 구속내용의 사실여부를 오히려 조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들도 그 수사결과를 믿지 않을 것인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문제가 된 서울시 감사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병모 변호사도 "정부 스스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야 하나 김철은 일종의 당사자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록 3당통합 이후 그 기

능이 무력화된 것은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 90. 5. 25

李文玉감사관 철야조사

大檢 7가지 非理진술 眞僞여부 규명

내일중 搜查결과 발표

대검 중앙수사부 3과 (법조) 24일 이문옥(50) 감사의 구속자부심 심리과정에서 법조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진술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1차로 이 감사관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은 앞으로 서울시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지난 88년 11월에 실시한 당시의 감사기록 등 관련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병부 이상)는 24일 이문옥(50) 감사의 구속자부심 심리과정에서 법조 감사원의 비리를 폭로한 진술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1차로 이 감사관 소환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이 감사관을 대검 조사실로 불러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지출 등 진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이 권력의 침투와 관련된 비리인 만큼 이에 관한 것이 수사권력을 믿을 수 없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검찰이 국회에 국정조사권 발동,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씨의 진술내용은 구속피의자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돼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나 이 문제가 공개적 쟁점이 된 이상 검찰로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그러나 그는 "현재로는 이씨의 진술내용만을 대상으로 본격수사를 벌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대검의 조사는 일단 사실확인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이 감사관을 대검 조사실로 불러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지출 등 진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검찰은 앞으로 서울시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지난 88년 11월에 실시한 당시의 감사기록 등 관련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검찰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김철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불법지출

중앙 90. 5. 25

「監査비리」수사 종결

檢察 관계자 18명 조사 사실 확인 안 돼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검은 서울지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90. 5.26
동아

90. 5.26
동아

檢察「監査院비리」조사

李감사관 실문 본격搜查 아닌 公訴유지 차원

감사원 서울시에 감사기록 등 資料 제출 요구
前감사원 사무총장 安景相씨도 불러서 조사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검은 서울지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검찰관계자들도 재판 기입의 압력에 따른 감사원 단상과 관련 「前감사원 사무총장 安景相씨를 검찰로 불러 조사했으나, 安씨로부터 재발기억을 회피하는 등 「監査비리」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90. 5.25
동아

【서울 11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검은 서울지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를 11일 종결하고, 18명 검사에 대한 「監査비리」 수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 제지 압력 많았다”

이문옥감사관 첫공판 진술 軍公제회 세금손실 시정못해 해외대사관 감사 안기부 주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인본에 공개해 중부상 비밀누출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관 이문옥(51)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순환 판사 심리로 열려 이 감사관의 모독진술과 검찰측 과징신문서 출항사건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년 공판에서 이 감사관의 진술을 통해 “감사관의 업무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여서 이해 여야 할에도 지난 84년과 87년

해외주재 대사관에 대한 감사가 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이 아닌 안기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86년 해외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본부장이 장관 용운동 총보좌 아르헨티나 장관 2명을 초청하는 데 불어난 비용 4천만원용 공사가 부당한 사정이 적발됐으나 상부 지시로 감사를 제지당하는 등 감사관의 독립성 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또 “지난 8

8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상성전자가 대구의 계열회사를 합법한 사실에 대해 감사하려 했으나 상부지시로 중단됐으며 같은 해 공인공제회에 대한 감사에서 퇴역 뒤에도 공포장 사용 때 세별소비세를 면제해줘 9억원의 세 손실이 난 사실이 나타나 이를 감사하려 했으나 단순히 통보처 분으로 끝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이처럼 감사관이

의외압력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감동을 느낀 나머지 지난 1월말 감사관이 내각제 아래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남기 위해 민주인권을 해위에 파견하고 서용대에 같은 목적의 민주유용력을 밝히는 동연구회와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하고 대의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이번 감사기록을 한겨레신문사에 제공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인철·박찬호·박인제 변호사 등 15명이 변론을 맡았으며 이 감사관의 가족과 이해찬·유인환 의원, 지진스 제차 등 방청객 1백30여명이 재판장을 감시했다. 7월19일 오전 10시.

한겨레. 90.6.29

監査院 檢察은 「財閥비호」 의혹 「鎮火금금」 인상

李감사관 폭로 非理일부 사실로 드러나

동아 1990. 5. 28

脫稅등 적발 數年씩 묵혀 調査 이틀만에 조기 종결

【서울 28일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51)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해외주재 대사관에 대한 감사가 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이 아닌 안기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86년 해외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본부장이 장관 용운동 총보좌 아르헨티나 장관 2명을 초청하는 데 불어난 비용 4천만원용 공사가 부당한 사정이 적발됐으나 상부 지시로 감사를 제지당하는 등 감사관의 독립성 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또 “지난 88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상성전자가 대구의 계열회사를 합법한 사실에 대해 감사하려 했으나 상부지시로 중단됐으며 같은 해 공인공제회에 대한 감사에서 퇴역 뒤에도 공포장 사용 때 세별소비세를 면제해줘 9억원의 세 손실이 난 사실이 나타나 이를 감사하려 했으나 단순히 통보처 분으로 끝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이처럼 감사관이

【서울 28일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51)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해외주재 대사관에 대한 감사가 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이 아닌 안기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86년 해외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본부장이 장관 용운동 총보좌 아르헨티나 장관 2명을 초청하는 데 불어난 비용 4천만원용 공사가 부당한 사정이 적발됐으나 상부 지시로 감사를 제지당하는 등 감사관의 독립성 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또 “지난 88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상성전자가 대구의 계열회사를 합법한 사실에 대해 감사하려 했으나 상부지시로 중단됐으며 같은 해 공인공제회에 대한 감사에서 퇴역 뒤에도 공포장 사용 때 세별소비세를 면제해줘 9억원의 세 손실이 난 사실이 나타나 이를 감사하려 했으나 단순히 통보처 분으로 끝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이처럼 감사관이

동아 90.5.28

사실

‘부정축재’ 증발을 국정조사하라

한 중견 공무원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결단과 행동은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패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문옥 감사관이 폭로한 정부의 비리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거액의 돈이 행방이 묘연한 채 어디론가 증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문옥 감사관은 지난 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가운데 21억원이 행방불명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압력을 받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 감사관의 주장을 근거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증발한 돈이 21억원이 아니라 3백97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평민당에 따르면 합수부에서 계엄사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2백17억원이 없어졌으며, 다시 계엄사가 재무부에 돈을 넘기는 과정에서 1백80억원이 사라져 모두 3백97억원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백60억원은 부정축재자들에게 반환했고 1백70억원은 재산평가액 차이라고 해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21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의 해명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반환’했다

고 주장하는 2백60억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되돌려주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평가액 차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재산을 평가해서 1백70억원의 차이가 났는지 자세한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문옥 감사관이나 평민당의 주장이 사실이고 감사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다. 만일 합수부나 계엄사가 80년 당시 부정축재 환수금을 단 한푼이라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유용했다면 ‘5공’정부는 부정축재자들보다 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비리를 ‘6공’정부가 덮어두려 든다면 6공의 도덕성과 정통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국회는 당연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문옥 감사관은 지난 7일 평민당과 민주당(가칭)과 국민연합이 주최한 ‘석방축재구대회’에서 ‘용감한 공무원상’을 받았다. 정부는 그를 가두고 야당과 재야는 그에게 상을 주며 많은 국민이 그의 수상을 축하하는 이 괴리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이며 한계이다.

한겨레 90.6.9

80년 부정축재 환수금

397億원 증발의혹

이문옥 감사관은 지난 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가운데 21억원이 행방불명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압력을 받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 감사관의 주장을 근거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증발한 돈이 21억원이 아니라 3백97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평민당에 따르면 합수부에서 계엄사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2백17억원이 없어졌으며, 다시 계엄사가 재무부에 돈을 넘기는 과정에서 1백80억원이 사라져 모두 3백97억원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백60억원은 부정축재자들에게 반환했고 1백70억원은 재산평가액 차이라고 해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21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동아 90.6.7

“부정축재 환수금 3백97억 증발”

평민 주장 이 감사관 진술바탕 조사 결과

평민당 이문옥 감사관 사건 조사대책위(위원장 홍영기 의원)는 7일 지난 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가운데 3백97억원이 원인불명으로 증발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책위는 지난 5월31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감사관을 접견, 이같은 진술을 듣고 모처에서 입수한 ‘합수본부 발표액과 정부 인수액 차이 내역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알려졌던 차액 21억원보다 훨씬 많은 3백97억원이 증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평민당 확대간부회의는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2면>

평민당은 또 감사원이 지난 89년 2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포기하고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겼던 점을 중시, 감사원장 직무유기 부분을 집중추궁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80년 합수본부가 발표한 헌납 재산이 1천1백33억원이었으나 계엄사에서 인수한 금액은 9백16억원으로 집계돼 2백17억원이 증발됐으며, 계엄사가 재무부 등에 인계한 액수는 7백36억원으로 이 과정에서 또 1백80억원이 증발됐다고 밝혔다.

평민당은 이에 따라 당시 합수본부장 전두환, 계엄사령관 이희성씨가 이 돈을 횡령했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준 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 빈자당 단독의 국회 법사위 간담회에서 합수본부→계엄사 인계과정에서 11억원, 계엄사→재무부·문공부 인계과정에서 1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있으며, ‘차액내역표’에는 2백60억원은 부정축재자들에게 반환했고 1백70억원은 재산평가액에서 비롯됐다고 기록돼 있다.

동아 6.8

부정축재 환수금 700억원이 지난 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가운데 3백97억원이 원인불명으로 증발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